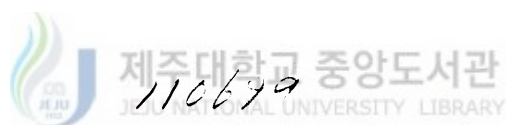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 教育主體의 學校教育에 대한 理解와 教育權과의 關係

- 濟州道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鎮 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李 泰 旭

2001年 8月


教育主體의 學校教育에 대한 理解와  
教育權과의 關係

-濟州道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梁 鎭 健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4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提出者 李 泰 旭

李泰旭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國文 抄錄 〉

# 教育主體의 學校教育에 대한 理解와 教育權과의 關係

-濟州道 中等學校를 中心으로-

李 泰 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梁 鎮 健

본 연구는 제주도 학생·학부모·교사의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고,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추진하였다.

첫째, 제주도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각 주체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둘째, 교육권에 대한 각 주체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중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22개 학교에서 학생 397명, 학부모 344명, 교사 367명으로부터 총 1,108부의 질문지를 회수(회수율 91.19%)하여 SPSS·WIN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육주체로서 학생·학부모·교사간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에는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태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공교육이 새롭게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은 주체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교사들은 스스로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교사집단 스스로가 사회적 평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신장되는 반면, 교사의 교육권은 축소 혹은 약화되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학교위기'는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예견된 결과이다. 따라서 위기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의 질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구성주체들의 의견수렴의 활성화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별로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셋째, 학생의 기본적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 확보를 위해 각 주체 간 협력 체제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인정과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해결하지 않고, 현재 한국 학교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의 규명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로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目 次

I. 緒 論 .....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2. 研究 問題 .....	2
II. 理論的 背景 .....	5
1. 學校教育의 內容 .....	5
1) 學校教育의 特性 .....	6
2) 學校教育의 實際 .....	10
2. 教育權 .....	15
1) 教育權의 性格 .....	15
2) 教育權의 主體 .....	19
(1) 學生의 教育權 .....	19
(2) 學父母의 教育權 .....	21
(3) 教師의 教育權 .....	23
(4) 教育主體間 教育權의 關係 .....	28
III. 調查研究 方法 .....	30
1. 調查 對象 .....	30
2. 測定 道具 .....	31
3. 資料의 分析 .....	33
IV. 調查 結果 및 解釋 .....	34
1. 學校教育의 實際에  대한 理解 .....	34
2. 教育權에  관한 理解 .....	46
3. 學校教育의 理解와 教育權과의 關係 .....	53
V. 要約 및 結論 .....	56
1. 要約 .....	56
2. 結論 .....	59
參考文獻 .....	61
<Abstract> .....	64
<附錄> .....	67

## < 표 목차 >

<표 III-1> 질문지 배부 및 처리 .....	31
<표 III-2> 질문지 구성 내용 .....	32
<표 IV-1> 교육과정의 편성주체 .....	34
<표 IV-2> 교과 외 교육활동 비중 확대 .....	35
<표 IV-3>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 정도 .....	36
<표 IV-4>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	36
<표 IV-5> 학생들의 수업이해 정도 .....	37
<표 IV-6> 학교 수업에 가장 장애 요인 .....	38
<표 IV-7>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호응 정도 .....	38
<표 IV-8> 학교 규율이나 예절 지도의 필요성 .....	39
<표 IV-9> 학교 규율 제정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	40
<표 IV-10> 학교 규율 제정 시 학생들의 참여 .....	40
<표 IV-11> 학생들의 규범의식과 의타심 정도 .....	41
<표 IV-12> 학생들의 학교 규칙 준수 정도 .....	41
<표 IV-13>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 .....	42
<표 IV-14> 학생 체벌의 허용 여부 .....	43
<표 IV-15>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열의 .....	43
<표 IV-16>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대응 .....	44
<표 IV-17> 학생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 .....	44
<표 IV-18>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 .....	45
<표 IV-19> 교사-학생 의사소통 정도 .....	45
<표 IV-20>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 이해 .....	46
<표 IV-21> 교육권의 행사 .....	47
<표 IV-22> 교육권 행사의 주체 .....	48
<표 IV-23> 교사와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이해 .....	48
<표 IV-24>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 .....	49

<표 IV-25> 교사 교육권의 의의 .....	49
<표 IV-26> 교육과정 결정의 학부모 참여 .....	50
<표 IV-27>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정도 .....	50
<표 IV-28>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	51
<표 IV-29> 학생의 권리 의식 .....	52
<표 IV-30> 학생의 학교에서 갈등 내용 .....	52
<표 IV-31> 학교교육의 이해에 대한 각 하위 요인의 관계 .....	53
<표 IV-32> 교육권에 대한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 .....	55
<표 IV-33>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 .....	55

## < 부록 표 목차 >

<부록 표 IV-1>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 정도 .....	68
<부록 표 IV-2>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	68
<부록 표 IV-3> 학생들의 수업이해 정도 .....	69
<부록 표 IV-4> 학생들의 학교 규칙 준수 정도 .....	69
<부록 표 IV-5>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 .....	70
<부록 표 IV-6> 학생 체벌의 허용 여부 .....	70
<부록 표 IV-7> 학생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이해 .....	71
<부록 표 IV-8> 교사-학생 의사소통 정도 .....	71
<부록 표 IV-9>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 이해 .....	72
<부록 표 IV-10> 교사와 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이해 .....	72
<부록 표 IV-11>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 .....	73
<부록 표 IV-12>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정도 .....	73
<부록 표 IV-13> 학생의 권리 의식 .....	74

# I. 緒 論

##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교육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에서 결정된다. 교육은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아계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교사·학부모·국가 등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 한국 학교교육은 어떠한가? 90년대 후반부터 대중매체와 학계에서는 한국 교육에 대해 “학교 존재 자체의 위기”, “학교·교실의 붕괴”<sup>1)</sup>현상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도 학교나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곧 한국 학교교육의 위기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 단절 또는 학교에서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전통적인 학교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것이다.<sup>2)</sup>

그 동안 한국 학교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아랑곳없이 산업 사회적 공교육 체제 내에서 행해졌다. 학교교육은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 학교교육에서 국가의 교육권만이 인정되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와 탈산업사회의 흐름은 학교교육에 변화를 몰고 오기 시작하였다. 곧 국가의 교육통제에 대한 대항논리와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교육에 관한 국가 권한의 상대화는 교육권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이어졌다. 하지

---

1) 김진경(1997), “학교교육, 존재 자체의 위기 그리고 대안”, 교과연구, 통권 제11호, 통일시대 교육연구소.

2) 이종태 외(2001),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 p.



만 이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 한국 학교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의 팽배, 교사의 권위 약화, 교육재정의 미비,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표출시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국가 등은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학교교육의 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학교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학교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자치 단체로서 제주사회를 경험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탈산업사회에서의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성과 상대성의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자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2. 研究 問題



학교는 학생과 교사, 행정가, 학부모를 그 구성원으로 한다. 이들은 학교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모든 수준의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체제하에서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그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 등은 이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사회는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협력관계로 파악되고 있다.<sup>3)</sup> 이들 교육주체들은 교육을 위하여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주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다. 곧 교육주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불신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한국 학교교육의 현실

3) 姜仁壽(1999), “교육권”,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도서출판 하우, p. 565.

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학교의 붕괴’라는 현실인식과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권 주체의 권리 인식에 대한 각각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학교교육에서 대한 인식-‘위기’ 또는 ‘붕괴’-”에 관한 논의는 첫째, 학교가 갖는 기능 효과성 상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교육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보시대, 소비주의 사회에서 학교 교육의 한계 효과성이 급격히 체감되면서 공교육의 위기가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강조<sup>4)</sup>하였고, 파행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식 학력주의가 철학이 없는 무 규범의 학교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나, 이제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으로써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학교붕괴’를 이해하고 있다.<sup>5)</sup>

둘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불능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차 혹은 청소년 문화의 충돌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라는 틀과 그 내부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의식 수준이 변화와 첨단세대인 성장세대의 문화의식과 격돌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학교붕괴’라는 것이다.<sup>6)</sup>

셋째,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든 교육개혁정책들에서 찾는 방식으로 교사에게 체벌을 금지시킴으로써 교사들의 학생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촌지 추방, 교원 정년 단축 등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교육정책들이 결국 ‘학교붕괴’를 촉발시켰다고 보고 있다.<sup>7)</sup>

마지막으로, 세대간의 의식 격차와 학교체제 수준에서 어떠한 변화가

---

4) 엄기형(1999), “학교붕괴 현상의 비판적 이해-학교의 붕괴이지 교육의 붕괴는 아니다-”, 『학교붕괴의 원인과 진단 토론회 자료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p. 45.

5) 김동춘(1999), “한국의 지배질서와 학급 붕괴”, 『학교붕괴의 원인과 진단 토론회 자료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p. 86.

6) 김민(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학연구』, 제3권 2호, 한국교육인류학회. p. 32.

7) 윤정일(1999), “학교교육 붕괴의 종합 진단과 대책”, 『제33회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있었는가를 찾는 논의의 방식이 연구되어 왔다.<sup>8)</sup>

다음으로 교육권에 대한 연구는 “교사·학부모들의 인식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권에 관련된 법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sup>9)</sup>와 “교사·학생의 교육권의 법리를 고찰하고 현장 실태를 진단함으로써 교육권 실현의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sup>10)</sup> 등 몇 편의 인식 조사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육권의 이론적 고찰과 법리 해석 등 문헌 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교육주체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의 측면과 연관된 논의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주체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에 관련한 자료를 얻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도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각 주체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둘째, 교육권에 대한 각 주체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셋째,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8) 이종태 외(2000), 전제논문, p. 17.

9) 金順子(1989), 교사·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10) 朴永珍(1990), 교사·학생의 교육권의 법리와 현장 적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II. 理論的 背景

최근에 학교교육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근대교육의 기본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1)</sup> 교육 주체간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상으로 학생-교사간, 교사-학부모간의 대립관계로까지 나타남으로써 학교 공동체 붕괴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주체들의 올바른 학교교육 실체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 행사에 대한 규명을 위해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유한다. 따라서 첫째, 학교교육의 이해를 위한 내용면에서 학교교육의 특성과 실제에서 현행 학교교육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특징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둘째, 교육권의 성격과 교육주체의 역할에 따른 교육권에 대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교육 실체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學校教育의 內容

본 절에서는 학교교육의 특성으로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관료체제화로 인한 학교교육의 경직성, 또한 한국적 학교교육의 고유한 특성, 교육적 기능의 약화, 사회적 기능의 약화, 그리고 학교교육의 실제에서 행해지는 활동인 교과지도, 생활지도, 새로운 세대의 등장들은 학교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1) 이종태 외(2000), 전계논문, p. 103.

## 1) 학교교육의 특성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면서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이다. 학교는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지닌 사회적 제도이자 조직이다.<sup>12)</sup>

단위 학교는 분명 학교공동체로서, 돌봄의 공동체(caring communities),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ies), 전문공동체(professional communities), 협동공동체(collegial communities), 참여공동체(inclusive communities), 탐구공동체(inquiring communities)의 성격을 지닌다. Sergiovanni는 학교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유형 또는 성격의 공동체 중에서 어떤 공동체로서 구체화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학교공동체의 형성(Building community in schools)”에서 학교공동체를 민주적 공동체, 전문공동체, 학습자공동체, 리더공동체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학교는 다양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학교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첫째, 학교공동체에서는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공동체에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동시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공동체에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어야 함과 동시에 구성원들 상호간에 신뢰가 증대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12) 이종재(1999), “교육지도자”, 정범모 외,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p. 24.

13) Sergiovanni, T(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 San Francisco, CA, Free press, p. 71.

이러한 가치들이 실현되지 못할 때 학교교육 주체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교육 주체간의 분쟁 발생의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4)</sup> 첫째, 학교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정책 수립·집행 및 평가과정에서의 교육공동체 구성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들의 권리와 자율성을 제약하는 풍토가 온존하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넷째, 교육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교원들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권위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는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 심리적인 갈등을 키우는 셈이 되었고 학교붕괴의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전환의 지체와 일부 학생 및 학부모의 왜곡된 인권의식은 학교붕괴를 낳을 소지가 있다.

여섯째, 불명확한 학생·학부모·교사·지역사회 인사들의 권리 및 책무는 학교를 학교구성주체들간의 이해 갈등의 장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 학교교육이 직면하게 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대 학교교육 체제에 잠재된 특성이 탈산업화 시대를 맞으면서 표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5)</sup>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관료체제의 성격에서 학교교육의 위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교교육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공교육체제란 “국가의 지원과 통제 하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sup>16)</sup>를 말한다. 여기서

14) 김성열(2001), “교육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학교분쟁의 해결 전략”,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0차 학술대회 자료집, pp. 99~100.

15) 이종태 외(2000), 전계논문, p. 103.

핵심 개념은 국가와 국민이다. 즉, 공교육체제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다수 국민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구성에서 공교육체제는 피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이 관료체제이다.

공교육체제의 보편화 이후 관료 체제화 한 학교교육의 경직성은 Silberman(1970)의 “교실의 위기”<sup>17)</sup>나 Illich(1971)의 “탈학교”<sup>18)</sup> 주장에서 보듯이 일찍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다양성과 변화를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종래의 거대 관료체제로 운영되는 공교육체제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sup>19)</sup>

한편 한국의 학교교육 체제는 국가 수준에서 운영의 틀이 대부분 결정되는, 거대한 단일 구조이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원의 양성과 임용, 학생의 선발, 그리고 시설과 설비를 위한 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개별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

다른 한편 학교교육 체제 안에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공교육 위계질서는 학교의 움직임을 더욱 경직화시킨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지만, 중앙집권적 학교교육 체제 속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장-교사로 이어지는 위계 서열이 분명하다. 국가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육재정의 배분 권한을 지니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세는 무시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 또한 인사와 예산 배정을 수단으로 하여 단위학교를 지시·감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니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학교 안에서도 교장의 명시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한에 비추어보면 교사의 자율성은 말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중층적인 구조적 제한 조건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변화

16)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서울 : 교육과학사, p. 332.

17) Silberman, C, E(1970), *Crisis in the Classroom : the Remaking of American Education*, New York: Random House.

18) Illich, I.(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per and Row.

19) 이종태 외(2000), 전계논문, p. 105.

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그들에게 적합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시도할 자신감이 잃게 된다.

학교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도록 지식, 기능, 태도, 규범 등을 습득시켜 주는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또 학교는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선발과 배치의 기능도 수행한다. 근대 사회의 산물인 대중적인 학교제도는 능력에 따른 선발과 배치를 통하여 사회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세대간에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능력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공인될 필요가 대두되었고 학교는 바로 이 기능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강한 열의는 학교를 통한 사회적 지위획득 기회를 얻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학교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 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sup>20)</sup> 그러나 최근 많은 교사들은 학교를 통한 사회 이동 효과가 가정의 경제력과 성적 또한 대학 입학에 따라 비례함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체감하기 시작한 곳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하여 계층적 지위가 낮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행동 이면에는 그들이 학교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불신, 즉 자포자기 의식이 편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공교육체제의 경직성이나 학교교육의 위상 변화는 근대 학교교육에 편재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특성 외에 우리나라의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재정의 만성적 부족에서 오는 기본 여건의 부실이다. 학급당 인원 수 과다, 과대규모의 학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어려

20) 김영화 외(1997),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 1945-1995,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 pp. 592-609.

21) 이종태 외(2000), 전계논문, p. 112.



은 교육 시설 등은 이전과 달리 개성이나 요구, 그리고 그것의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요즈음의 학생들을 종전처럼 하나의 집단으로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다양한 특성의 다수 학생들을 종래의 학교 규범으로 통제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둘째,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과 이로 인한 권위주의적인 정책 집행이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절실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때로는 매우 불합리하게, 교사들의 헌신과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교사들의 자괴감과 무력감을 키웠을 뿐이었다. 이러한 무력감은 곧 학생 지도의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학교교육을 부실하게 만든다.<sup>22)</sup>

셋째, 과도한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이다. 업적주의 사회에서 선천적인 능력이 있거나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이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때로 우리 사회의 장점으로 꼽히는 ‘교육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학교교육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본질은 상실한 채 학벌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하고, 결국은 학교교육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비롯되는 다른 또 문제는 학교교육의 다양한 능력의 계발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정보다는 입시의 당락이 최종 목표가 됨으로써 이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잠재력의 계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 2) 학교교육의 실제

학교의 본원적 기능은 교육이다. 교육 기능의 핵심은 학생들에 대한 교과 지식의 전수와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이러한

---

22) 윤정일(1999), 전제논문, p. 35.

기능이 주로 가정의 몫이었으나, 근대 산업사회 이후에는 학교가 독점해오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발달을 시발로 하여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 최근에는 인터넷까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교육에 대한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첫째 양상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라는 지위의 상실로 나타난다. 매체가 다양화, 첨단화하면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둘째 양상은 도덕적 권위의 상실로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제공 못지 않게 사회의 규준이 되는 가치를 전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이나 일반인에 대하여 교사는 도덕적 권위를 지닐 수 있었다. 비교적 동양 문화권에서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중시되고 또 가능했던 것은 이러한 권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치가 다원화하였을 뿐 아니라 격차가 커지면서 이러한 권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지고 있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의 규준 가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며, 그나마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수요하지도 않는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생활지도이든 지식의 전달이든 적극적인 교육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은 크게 교과지도(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로 구분된다. 교과지도활동이 주로 학생의 인지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생활지도활동은 학생의 인격 완성을 조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전인교육)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과지도활동과 생활지도활동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실천되어야 한다.<sup>23)</sup>

그것은 사람이 교육받지 못할 경우 이는 곧 그가 사회 안에서 사람답게 살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명 된 사회라면 그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이래서 ‘교육받을 권리’는 곧 ‘인간다운 삶의 청구권’이라고

23) 오만록(2001), 「학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p. 441.

볼 수 있다.<sup>24)</sup> 학교는 이러한 막중한 의미를 갖는 인간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곳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핵심은 교과지도활동이다. 교과를 가르치는 일은 학교가 하는 교육의 핵심이고 중추이다. 학생은 교과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더 가치로운 상태로 변화시키게 된다. 보다 명석하게 사고할 줄 알게 되고, 옳고 그른 일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행할 줄 알게 되며, 진선미를 음미하고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세상을 보는 안목을 지니게 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방편을 얻게 된다. 교과를 학생에게 경험시키는 일이 '수업'이다.

그래서 '수업'은 학교가 다해야 할 의무와 역할의 중심이 된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곧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업이 제 모습을 잃게 될 때, 그것은 곧 학교가 제 모습을 잃는 것이 된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학교의 의무와 역할 수행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수업'은 높은 경지를 갖는 활동으로서 교육자의 힘겨운 도전을 요구한다. 수업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점을 그 자체의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 활동으로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교육적 과업이다. 학교가 제 의무와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로 평가됨될 수 있다.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수업이 그 본래의 경지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오늘의 학교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문제제기는 일차적으로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여야 한다. 지금 학교의 수많은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고, 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sup>25)</sup>

아울러 생활지도는 학생을 올바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달

24) 허병기(2001), "수업과 학교장 지도성", 『21세기 학교경영과 학교장의 리더십』,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0차 학술대회 자료집, p. 42.

25) 허병기(2001), 상계논문, p. 43.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생활지도를 단지 진로지도로서의 직업지도나 진학지도로만 생각하기도 하고,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활동으로만 보기도 한다. Glanz에 의하면 교육은 주로 집단이나 다수의 학생들에 중점을 두지만, 생활지도는 개인에 중점을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소집단, 대집단 또는 전체집단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교육은 과거에 축적해 놓은 지식을 통해서 사회의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고, 개인이 삶에서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돕지만, 생활지도는 각 개인들로 하여금 교육의 산물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유기체로서 자신의 미래 기능을 계발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교육과 생활지도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Shertzer와 Stone은 생활지도를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주위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과정’(the process of helping individual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ir world)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의미는 첫째, 과정(process)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로 목표를 향해서 진전되는 지속적인 일련의 활동이나 단계라는 것이다.

둘째, 조력(helping)은 인간의 문제들을 예방·치료·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는 뜻이다.

셋째, 개인들(individuals)은 발달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 자신과 자신의 세계(themselves and their world)는 자기 자신과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적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생활지도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 즉 가정적·교육적·직업적·신체적·정서적·인성적인 제반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조력활동이다.<sup>26)</sup>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학교 실제에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상담 활동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인 ‘신세대의 등장’이

26) 오만록(2001), 전계서, pp. 442~443.

다. 우리 사회에서 ‘신세대’라는 말이 사회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90년대 초이다. 이들 세대는 1970년대, 즉 경제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국민1인당 소득이 1만달러 내외의 성장을 거두었던 시절이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신세대에 관한 논의는 X세대, Y세대, N세대라는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전개되었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점점 세대간 갈등으로 변모되면서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절망감을 표현하게 되고 이로 인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만나기 점점 어렵다고 하고, 교사와 학생의 공감대가 줄고 있고, 특히 교사와 학생의 연령 격차가 클수록 이를 심각하게 느낀다고 한다.<sup>27)</sup>

이러한 신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특성-개인주의, 개성 세대, 소비 세대, 영상 세대-이미지와 감성 세대, 통신 세대-들을 가지고 있다. 종래의 학교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문화는 신세대의 그것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학교는 신세대 학생들의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수준, 개성을 존중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어렵다. 교육과정은 이미 수준과 내용이 정해져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학교, 다인수 학급에서 질서와 학생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개인으로 존중받기보다 집단으로 통제된다. 따라서 학교를 유지시켜 온 원리와 조건들과 충돌하는 신세대들은 학교 밖에서 나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학교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리들을 학교 밖에서는 견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학교 안팎의 생활은 분열되어 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사회의 급격한 발달, 대중사회와 대중 교육화, 직업의 전문화 및 세분화, 개성중심의 인간교육실천의 당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지도는 더욱 필요하게 된다.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교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경쟁 및 생존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결과 정서불안, 개인차의 심화 등의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으로써

27) 윤철경 외(1999),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연구, 연구보고, 한국청소년개발원, p. 57.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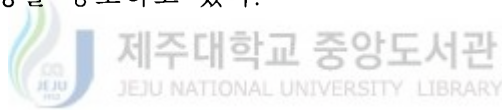
둘째, 청소년들은 어느 분야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는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직업안내와 진로지도 등 전문적이고도 객관적인 직업지도가 요청되고 있다.

셋째, 사회양상의 변화 및 물질문화의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른 정신문화가 이에 상응하게 발달하지 못해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나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 급격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넷째, 심리검사의 발달과 인본주의 교육사상의 영향으로 흥미, 적성, 능력 등의 개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활동에서도 개인차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고, 이에 따른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다섯째,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생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8)</sup>

## 2. 教育權



본 절에서는 교육권의 성격과 교육주체의 역할에 따른 교육권으로 학생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권리 근거와 내용, 그리고 교육주체간 교육권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권의 성격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재 교육학계나 헌법학계에 통일되어 있지 않다. 교육학계에선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나타내는 용어와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하위법률상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권한을 나타내는 용어를 단순

28) 오만록(2001), 전계서, pp. 446~447.

히 “교육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의 이론 구성의 치밀함과 구체적 권리보장의 실행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육권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각 주체들(학생·학부모·교사·국가)의 발언권, 또는 참여권을 말한다.<sup>29)</sup>

宗像誠也교수 이래의 국민교육권논상의 개념으로, 교육정책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그 방향을 좌우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권리·자유를 교육권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sup>30)</sup>

둘째, 교육권이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칭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교육권은 국가, 친권자, 교사, 학교의 설치 또는 설립자와 그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는 보장되지 않는다.<sup>31)</sup>

이런 견해에 의하면 교육권은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국가, 친권자, 교사, 학교 설립자 등에게 배분된다는 것은 기본적 인권의 불가분·불가항력적 성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헌법이론상 받아들일 수 없다.<sup>32)</sup>

법리학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육권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9) 姜仁洙(1989), 「교육법 연구」, 문음사, pp. 23~24.

30) 盧璣鎬(1998),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p. 31.

31) 安基成(1989), 「교육법학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p. 104/123.

32) 盧璣鎬(1998), 전계논문, p. 31.

첫째, 헌법학에서도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지칭하는 통일된 용어는 없고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각각 설명하고 있으며, ‘교육권’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학습권”, 즉 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 학습하고 인간적으로 발달·성장하여갈 권리로 보고, 이러한 ‘학습권’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교육을 할 권리’를 “교육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권은 어린이 등의 피교육자의 인간성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며, 민주적인 국가 사회의 담당자를 육성한다고 하는 국민적인 의무와 책임 및 그를 다하기 위한 권한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3)</sup>

셋째, 교육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헌법 제31조의 단순한 문리해석을 벗어나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표현에 구애되지 않고 헌법전체의 구체적인 파악을 전제로 한 ‘교육기본권’으로 재정리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교육기본권’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구체적인 관련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제시해 줄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종래의 역사적인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의 총칭으로서 사용되었던 광의의 교육권과 구별하여, 협의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 주체(관련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개인·구체적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육기본권의 보장 수단으로서 각 당사자에게 분화되어 인정될 수 있는 권리 또는 권한”<sup>34)</sup>이라고 한다.

우리의 헌법학자들은 거의 <받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각각 ‘학습권’ 또는 ‘수학권’ 등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응하여 교육을 <하는> 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권’이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인정되는 또 다른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

33) 盧璣鎬(1998), 상계논문, p. 31.

34) 申鉉植(1990), 교육기본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82.



인지 아니면 하위법률상 인정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 내지 권한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sup>35)</sup>

철학적 분석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육권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권은 일종의 천부권(entitlement)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같은 보편권(universal rights)라고 하며, 교육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교육받을 권리인 반면, 여타의 복지권은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가 요구되는 사람(예컨대, 극빈자, 환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구분은 ‘복지’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정당화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 이를테면 의무교육에 관한 한, 거기에는 일종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그것은 국가 또는 교육 당국이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무라는 점과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학생에게 가르치는 일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권과 교육권을 대행하는 주체이지만, 교육권의 소유자는 교육받는 자녀에게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제도, 조직, 절차 등을 규정한 실정법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시킬 권리’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권’에 관한 그릇된 인식이 일반인에게 상당히 퍼져 있는 한, ‘교육받을 권리’로 “교육권”을 규정함이 옳다고 보고 있다.<sup>36)</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 교육주체가 가질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하게 된다. 광의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인권(교육인권, 교육기본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협의의 ‘교육권’ 개념과는 그 법적 성질과 주체 및 내용에 있어 엄연히 구분되므로 그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는> 또는 <받는> 으로 발생하는 권리에 대한 법적 명료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5) 盧璣鎬(1998), 전계논문, p. 32.

36) 金丁來(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p. 42.

## 2) 교육권의 주체

### (1) 학생의 교육권

학생의 교육권이라 함은 권리 법령설에 따라 “교육에 관한 일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아동·학생에게 주는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즉 “법에 의하여 보장된 아동·학생의 권리에 관한 권리”<sup>37)</sup>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한 규정은 교육권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차적으로 아동·학생의 교육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아동·학생의 교육권은 아동·학생의 생존권과 발달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자연권의 일부이요 기본적인 인권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 발달해 나가는 것은 자연법적 질서이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과정은 끊임없는 탐구와 학습의 과정이다.<sup>39)</sup>

아동·학생의 교육권은 교육활동에 있어서 어느 주체의 교육권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생의 교육권을 제외한 다른 주체들의 교육권은 아동·학생의 교육권을 원만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후원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권의 구조를 말할 때 우리는 아동·학생의 교육권을 정점이나 핵심으로 하고 다른 주체의 교육권은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하위의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0)</sup>

아동·학생의 교육권의 내용은 첫째, 의무성과 아동·학생의 권리로써 의무성은 모든 국민, 특히 아동·학생에 대하여 학교를 비롯한 여러

---

37) 姜仁壽(1986), 학생·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 24~25.

38) 장익수(1983),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 8.

39) 李相世(1990),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와 구조 탐색,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p. 27.

40) 安基成(1987), “교육법학의 방법”, 「사대논집 제5집」, 고려대학교, p. 51.

종류의 학습의 장이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공적인 의무로 된 원리이다. 의무교육제도의 유형은 교육의무, 취학의무, 국·공립취학 의무 등이 있는데, 취학의무가 가장 일반적이며, 의무교육에서의 아동·학생 교육권은 취학권과 학교 선택권이다.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권은 구체적으로 학교선택권으로 한정하는 데 이에는 의무 취학권, 사립학교 선택권, 통학권(적정하게 배치된 학교에 다닐 권리), 취학교 지정·변경 처분에 대한 학생의 권리, 의무취학과 종교의 자유, 입학에서의 차별 금지 등이 있다.

둘째, 무상성과 아동·학생의 권리로서 무상성은 교육을 받을 사람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때 또는 받게 될 때에 있어서 수업료, 교통비, 그 밖의 모든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으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교육 무상의 의무는 헌법의 원리로 규정되고(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비의 공적 부담화의 원칙은 공교육으로서의 사학교육 및 사회교육의 조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의 권리에는 ‘교육조건 정비 요구권’으로서 교육비 국고 부담 청구권과 학교시설·환경 정비 요구권 등이 있다.

셋째, 중립성과 아동·학생의 권리로서 이 중립성·자주성은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적 실질을 이루는 원리로서 교육활동에 있어서 종교적 종파성과 당파적 편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공교육은 이와 같이 아동·학생의 인격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전인적인 발달을 꾀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 곧 편향교육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 세력의 부당한 지배가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교육내용의 결정에 대한 참여권 또는 선택권이다. 교육내용의 결정에 대한 참여권 또는 선택권에는 교과서 작성·선택에 관한 권리, 교육과정 선택, 종교의 자유, 애국행사 참여에 대한 권리, 특별활동 등 학사(진급·수료·졸업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넷째, 일반인권과 아동·학생의 권리로서 일반인권이란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적 기본권이다. 곧 아동·학생의 생명, 신체, 사생활 및

privacy, 사상,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해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 조건의 정비 의무가 국가에 과해지고 있지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교사 외에 학생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로서 일반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신체, 사생활, 사상,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적정한 처분을 받을 권리(적정판정 요구권)와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동·학생의 생활의 자유로서 신체·복장·표현·집회·체벌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sup>41)</sup>

## (2) 학부모의 교육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그 자체 속에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이며, 또한 자녀의 성장과 인생의 행복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포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연적 친자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권리로서 자연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1959년에 채택된 UN의 아동권리선언은 제7조 2항에서 아동의 교육 및 지도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그 지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책임은 우선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2)</sup>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의 대행자가 친권자임을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무’는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부모에게 부과되는 헌법상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sup>43)</sup>

41) 姜仁壽(1999), “교육권”,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p. 565~567.

42) 朴秉碩(1997),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p.24.

43) 金官洙(1996),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p. 46.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제5조 제2항에서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제13조 제1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자녀 또는 아동·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13조의 취학의무 외에도 제18조 제2항에서 학생을 징계 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은 아동·학생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의 교육권 대항자로서의 권리를 부모는 국가에 대해서 교육조건 정비를 요구하고 교육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교육의 부적합성, 교육의 비전문성, 학교 및 과목선택의 확대 등에 그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sup>44)</sup>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부모의 교육권의 범위로는 첫째, 자녀의 지적능력에 알맞은 감독과 보호 둘째, 자녀를 도덕적 위험이나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셋째, 생활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부양을 하는 것 넷째, 학교에의 출석을 배려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sup>45)</sup>

학부모의 교육권 내용은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으나, 첫째는 친권자 스스로 교육을 하는 권리이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신의 출생과 생활에 제1차적인 인간환경이다. 이러한 관계로 자녀에 대한 가정환경은 그 부모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는 그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모든 방해를 배제하는 권리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자녀의 의사를 보완시켜 주는 행위인데, 그의 의사결정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다.<sup>46)</sup>

44) 백명희(1989), "교육구성집단의 권리·의무책임의 재조명", 『교육학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교육학회, p. 33.

45) 李相世(1990), 전제논문, p. 32.

46) 김낙운(1986), 『교육법 해설』, 서울 : 하서출판사, p. 91.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공교육의 의무성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으로 이는 학교선택권으로 한정되는 데 교육법상에도 한정된 것은 아니다. 주로 공립학교에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법에 사립학교제도나 국립의 부속초등학교 또는 특수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의해서 취학과 졸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극히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학교선택권의 행사가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겠다.

그러므로 학문과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전통, 학교규모, 학교환경, 통학조건 등에 따라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학교, 자기의 종교적 신앙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추첨 배정제를 보완하여 학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한다.<sup>47)</sup>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내용 선택권은 학교교육과정 선택권이 있다.

학교교육과정 선택권은 아동·학생의 이익과 학교운영에서의 능률과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과목을 폐지하거나 학교의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참가권은 친권자의 교육의 자유로 교육의 전문성과 내실성을 고려하여 교육권의 일부를 국가에 신탁할 수 있고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의 공교육에 참가할 수도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해서 자녀의 교육에 대해 1차적 책임과 권리가 있으므로 학교운영의 참가는 물론 학부모교실, 학부모회 등의 사회교육 관계단체의 성격을 갖고 성인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동의 생활지도,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봉사활동과 기타 학생 단체에 대한 후원회활동을 하는 등 학교교육에 참가권이 있다.

### (3) 교사의 교육권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며,

---

47) 崔千衍(1997), 교육자치제에 있어서 관련주체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31.

단지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제20조 3항)”<sup>48)</sup>라고 하여 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교원을 정의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아동·학생을 지도·교육하는 교사권이 다. 교사의 아동·학생을 교육할 권리는 자연법상으로는 부모의 신탁에 의한 것이고, 실정법 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한 것이며, 이는 자격증제도나 채용 등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법적으로 교사의 지위에서 성립하는 기능이므로 직권이지 교사 개인의 자유권은 아니며 사항적 권한이다.<sup>49)</sup>

교사는 교육과정상의 활동이라는 내적 사항에 대해 교육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직접적으로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의 활동은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자유로운 학습에 대응한 교육과정도 당연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교육권은 교직의 전문성을 요청하며, 친권자의 교육권과 학습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sup>50)</sup>

교사와 교사집단은 공교육조직 내에서 자치적 권한으로서의 독립된 ‘교육권한’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교육권은 그 자체가 교사의 인권은 아니더라도 역시 학생의 교육인권보장의 일환을 이룬다는 점에서 교육 인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며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근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본질적 근거로 첫째, 교육의 인간적 주체성으로 교육과 학습에는 인간적 주체성이 불가결하다는 것으로, 교사의 인간적 활동을 통한 학생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인간적인 주체성과 자주성이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진리교육의 자주성으로 진리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자유는 권력

48) 盧琪鎬(1998), 전계논문, p. 66.

49) 姜仁洙(1998), 전계논문, p. 22.

50) 姜明求(1999), 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p. 22.

적 다수결의 방식에 친숙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의 제1조건은 진리만을 교육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은 가능한 한 정치적 권위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교육의 전문적 자율성으로 어린이의 인간적 발달의 법칙성을 고려한 교육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가능성의 전면적 개화를 목표로 하는 의도적 행위로서의 교육은 학생의 인간적 발달의 법칙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자주적 책임성으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학생과 부모의 교육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가는 일상적인 직접책임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이 밖으로부터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교육활동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sup>51)</sup>

위의 여러 학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사의 교육권의 근거는 어느 한 이론에만 의거할 수는 없고, 학생의 인간적인 모든 능력의 개화와 인격적인 성장발달의 추구라는 교육의 본질에 입각할 때는 교사의 교육권의 근거로는 교육에 관한 조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 및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학습권 및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적론적 입장에서는 그 근거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실적인 교사의 교육활동의 보장의 측면에서는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와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은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교육권의 기저를 이루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과 교직의 독립성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종교로부터의 중립을 의미하고, 교직의 독립성이란 교육권의 독립권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으로, 교사가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하

---

51) 盧璣鎬(1998), 전계논문, p. 88.



여 교사 스스로의 지식과 양심에 쫓아 외부의 부당한 지배를 받음이 없이 자유스럽게 재량껏 행하는 권리이다.<sup>52)</sup>

교사의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과정 활동상의 권리로서 첫째, 교육과정의 편성권은 교육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며, 교육내용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교재의 선택·결정권 문제의 초점은 교육의 필요한 교재를 누가 만들며, 만들어진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이냐가 모아진다. 교육법 제175조 제1항의 교과용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한 것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학교의 장은 1종 도서(1종 교과서 또는 1종 지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 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절대적 제약을 받고 있다.<sup>53)</sup>

셋째, 교과내용 및 방법의 선택·결정권은 교사가 교실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선택할 권리와 선택한 내용을 가르칠 권리,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제31조 제4항)의 법적 성격과 내용의 문제로 보아지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에 대해 주로 교사의 정치활동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국가권력의 교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sup>54)</sup>

이러한 중립성을 현실화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교육제도의 중립성, 교육행정의 중립성, 학교경영의 자주성과 교사의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학생·친권자 및 교사의 결정, 선택,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사는 당연히 교재의 선택과 함께

---

52) 盧璣鎬(1998), 상계논문, p. 89.

53) 姜明求(1999), 전계논문, pp. 27~36

54) 金哲浩(1989), 한국교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p. 37~38.

교수내용 및 방법의 적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하겠다.<sup>55)</sup>

넷째, 성적 평가권이란 교사의 교육활동은 학생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전제로 끊임없이 새로운 평가를 하고 교육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 교육적 평가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자기점검으로서 구체적으로 설계된 교육목표에 있어서 학생들의 도달수준과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관찰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교육권의 일종이 바로 이 성적 평가권이다.<sup>56)</sup>

다섯째, 학생징계권은 학교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체벌 등의 사실적 징계와 퇴학, 정학과 같은 학생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법률상 징계가 있다. 학생의 징계에 관한 법규정을 보면, 교육법 제76조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의무교육에서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서 퇴학 및 정학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 판례<sup>57)</sup>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처벌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고, 교육상의 징계의 개념에는 처벌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합법적인 징계권 행사가 정당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교육상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성,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법 제76조에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교장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효력이 따르는 징계처분 이외의 사실행위로서의 학생징계권은 교사도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58)</sup>

또한 교사의 교육권의 다른 내용은 교육과정 외 활동상의 권리가 있

55) 姜明求(1999), 전계논문, pp. 31~33.

56) 金哲浩(1989), 전계논문, pp. 41~42.

57) 大法院 判例(1976. 4. 20), 75도 115.

58) 姜明求(1999), 전계논문, p. 35.

다. 이 권리는 교사의 정치활동이나 집회·결사 및 언론·출판 등 교사가 교육활동 이외에서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4) 교육주체간 교육권의 관계

교육주체 상호간 교육권의 관계를 정리<sup>59)</sup>하면 첫째, 교육에 관한 모든 권리는 근원적으로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시작된다. 이 권리는 생태적인 자연권, 기본적 생존권 및 사회권적 성격을 지닌 복지의 권리이면서 불간섭의 권리이다. 아동·학생의 교육권을 제외한 여러 주체 등의 교육권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하는 교육권의 구조에서 중핵적인 위치에 있는 권리이다.

둘째,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은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일차적으로 양육하고 교육받을 의무를 이행 할 권리 또는 의무이행의 권리로서 외부에 대하여 대항자이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한한 권리 행사를 할 것 같으면서도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아동·학생의 삶에 대해서 자유 선택할 권리가 없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부과되는 관계이다.

셋째, 교사는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대리자로서 아동·학생에 대하여 교육할 권리를 갖고 교육의 기준을 지킬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교사는 아동·학생들이 자아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기본 인권을 보장하면서 교육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다.

넷째, 아동·학생에 대한 국가의 교육권은 공교육의 제도적인 실체이며, 국민의 총체적 의사를 대표하여 교육조건에 대한 지원과 정비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며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지는 후견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다.

다섯째,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은 국가에 위탁한 자녀 교육에

59) 崔千衍(1997), 전계논문, pp. 61~62.

일차적 권리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교육권을 수탁 받은 교사와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상호 협력관계이다. 학부모는 자녀의 인간다운 인간, 능력 있는 인간 육성을 위해 학교교육의 동반자로서 학교경영에 참여하여 학부모회, 학부모교실, 등의 사회교육 관계 단체의 성격을 갖고 성인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동·학생의 생활지도,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등 교사를 위한 봉사활동 및 기타 학생단체에 대한 후원회활동으로 학교교육에 지원과 협조를 한다.

여섯째, 교사의 교육권에 대해 국가의 교육권은 교육을 조직하며 책임지는 주체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전제로 한 교사의 교육권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감독하고 통제한다. 국가는 교사의 전문직성 등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권한을 조건정비에 한정하고 교사의 자율성, 교육의 자유, 교육기관의 자치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교사의 교육권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관계로서 교육기관들에 지도 감독과 교육조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한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교육권의 관계구조는 아동·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중핵으로 하여 여러 주체들의 교육권과 상호간 맞물려 있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즉 어느 한 교육권만이 분리·독립될 구조가 아니며, 각 주체별로 여러 주체의 교육권과 역동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다.

여러 주체 상호간 협력관계는 그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중핵을 이루고 있는 아동·학생의 교육권이 확대되어갈 것이고, 이는 곧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그 수준만큼 보장되어 지고 확보될 것이다. 교육권 관계구조는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을 때 이상적이다. 어느 한 교육권이 확장되거나 강화되면 다른 주체들의 교육권은 축소 또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 확장된 교육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주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동·학생의 기본적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 확보를 위해 협력관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 Ⅲ. 調査研究 方法

#### 1. 調査 對象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중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로서, 학교급과 지역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의 실제와 교육권에 대한 이해는 교육주체의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학교급은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고, 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는 모두 개인 단위가 아닌 학교 단위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여기서 학생의 대상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대상을 학생·학부모·교사 각 400명으로 하고 먼저, 학생인 경우는 중학교 3학년 200명과 고등학교 2학년 200명을 지역별 학교 비례에 따라 할당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다음으로 학부모 집단은 중학교 3학년 학부모 200명과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200명에게 학부모용 질문지를 배부하고 가정에서 실시하여 학생을 통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학생, 학부모 대상을 위하여 선정된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400명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기간은 2001년 3월 26일부터 3일간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실시상의 유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4월 7일까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우편으로 회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22개 학교에서 학생 397명, 학부모 344명, 교사 367명으로부터 총 1,108부의 설문지가 회수(회수율 91.19%)되어 분석되었다(<표 Ⅲ-1>).

< 표 III-1 > 질문지 배부 및 처리

대상	학교급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배부	회수	배부	회수	%
학생	중학교	학교수	4	4	2	2	3	3	3	3	12	12
		사례수	80	75	30	29	40	36	50	47	200	187
	고등학교	학교수	4	4	2	2	2	2	2	2	10	10
		사례수	104	103	40	39	35	34	35	34	214	210
	소계	학교수	8	8	4	4	5	5	5	5	22	22
		사례수	184	178	70	68	75	70	85	81	414	397
학부모	중학교	학교수	4	4	2	2	3	3	3	3	12	12
		사례수	80	71	30	26	40	38	50	43	200	178
	고등학교	학교수	4	4	2	2	2	2	2	2	10	10
		사례수	90	72	40	34	35	34	35	26	200	166
	소계	학교수	8	8	4	4	5	5	5	5	22	22
		사례수	170	143	70	60	75	72	85	69	400	344
교사	중학교	학교수	4	4	2	2	3	3	3	3	12	12
		사례수	80	74	30	26	40	38	50	45	200	183
	고등학교	학교수	4	4	2	2	2	2	2	2	10	10
		사례수	90	87	40	29	35	35	35	33	200	184
	소계	학교수	8	8	4	4	5	5	5	5	22	22
		사례수	170	161	70	55	75	73	85	78	400	367
전체	학교수	24	24	12	12	15	15	15	15	66	66	
	사례수	524	482	210	183	225	215	255	228	1,214	1,108	91.19

## 2. 測定道具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질문지로서 학교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60)에서 제작한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교육권에 관한 질문지는 연구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표 III-2>).

60) 이종태 외(2000), 전계논문. pp. 197~216.

〈 표 III-2 〉 질문지 구성 내용

척도 구성	하위변인	문항 내용	학생	학부모	교사	문항수	
학교 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	교과지도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주체	1	1	1	7	
		교과 외 교육활동의 비중 확대	2	2	2		
		수업 시 집중 정도	19	19	19		
		수업에 집중되지 않는 이유	19-1	19-1	19-1		
		학생들의 수업 이해 정도	20	20	20		
		수업의 방해 요인	21	21	21		
		수업 중 교사 지시에 대한 호응 정도	22	22	22		
	생활지도	학교 규율이나 예절지도의 필요성	3	3	3	7	
		규율 제정시 학부모의 참여	4	4	4		
		규율 제정시 학생의 참여	5	5	5		
		학생들의 규범의식과 의타심 정도	11	11	11		
		학교 규칙 준수 여부	23	23	23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	23-1	23-1	23-1		
		체벌의 허용 여부	10	10	10		
	교사-학생 상호 이해	교사-학생 상호 이해	교사의 지도 열의	6	6	6	6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반응	7	7	7	
			학생 의식과 행동에 대한 교사 이해	8	8	8	
			학생들의 행동 변화 반응	9	9	9	
			교사-학생 의사소통 정도	24	24	24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	25	25	25	
	교육권에 관한 이해	교육권의 성격	교육권의 개념 이해	12	12	12	3
교육권 행사의 주체			28	28	28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 인식			13	13	13		
교사의 교육권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	26	26	26	2	
		교사 교육권의 의의	16	16	16		
학부모의 교육권		교육과정 결정의 학부모 참여	14	14	14	3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약화	15	15	15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17	17	17		
학생의 교육권		학생의 권리 이해	18	18	18	2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갈등 내용	27	27	27		
문항수			30	30	30	30	

14번은 역문항

### 3. 資料의 分析

수집된 자료 중 분석에 최종 사용된 설문지 1,108 사례는 편집, 부호화과정을 거쳐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WIN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다. 이를 통해 첫째,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와 각 변인들간 학교교육의 실제와 교육권에 관한 이해를 교차분석(Chi-Square Methods)을 통해 그 차이를 검토하였고 둘째,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IV. 調查 結果 및 解釋

### 1. 學校教育의 實際에 대한 理解

#### 1) 교과지도

##### (1)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주체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관련하여 학생의 선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통해 교육과정의 참여주체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의 74.9%가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반해, ‘필요하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하다.

이를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들보다 교육과정의 편성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학부모의 77.4%, 학생의 77.1%, 교사의 70.1%의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표 IV-1> ).

< 표 IV-1 > 교육과정의 편성 주체 (단위 : 명, %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55(39.3)	149(37.8)	71(18.0)	12(3.0)	7(1.8)	394(100.0)	
학부모	126(36.8)	139(40.6)	58(17.0)	9(2.6)	10(2.9)	342(100.0)	76.768***
교사	69(18.9)	187(51.2)	59(16.2)	45(12.3)	5(1.4)	365(100.0)	
계	350(31.8)	475(43.1)	188(17.1)	66 (6.0)	22(2.0)	1,101(100.0)	

\*\*\* :  $p < .001$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이 학교나 교사 중심에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2) 교과 외 교육활동의 비중 확대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교육활동(예: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재량활동)의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의견 중에서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각각 70.3%, 56.0%, 56.8%)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많다. 특히 학생들이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표 IV-2>).

<표 IV-2> 교과 외 교육활동 비중 확대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72(43.7)	105(26.6)	80(20.3)	28(7.1)	9(2.3)	394(100.0)	
학부모	69(20.2)	122(35.8)	101(29.6)	40(11.7)	9(2.6)	341(100.0)	
교사	66(18.0)	142(38.8)	107(29.2)	48(13.1)	3(0.8)	366(100.0)	82.885***
계	307(27.9)	369(33.5)	288(26.2)	116(10.5)	21(1.9)	1,101(100.0)	

\*\*\*:  $p < .001$

(3)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 정도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에 대하여 교사의 31.0%는 대부분의 학생이 집중한다고, 49.0%는 반정도의 학생이 집중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은 2.1%만이 대부분의 학생이 집중한다고 대답하였으며, 52.2%만이 반정도 집중한다고 대답하였다. 곧 교사들은 80.0% 학생이 수업에 집중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의 45.7%는 ‘소수만 혹은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셈이다. 학부모의 인식도 자녀와 같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표 IV-3>)( <부록 표IV-1> 참조).

〈표 IV-3〉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 정도

(단위 : 명, %)

구분	대부분 집중	반정도 집중	소수만 집중	거의 집중안함	계(%)	유의도 ( $\chi^2$ )
학생	8(2.1)	202(52.2)	161(41.6)	16(4.1)	387(100.0)	148.447***
학부모	39(11.7)	175(52.6)	112(33.6)	7(2.1)	333(100.0)	
교사	112(31.0)	177(49.0)	68(18.8)	4(1.1)	361(100.0)	
계	159(14.7)	554(51.2)	341(31.5)	27(2.5)	1,081(100.0)	

\*\*\* :  $p < .001$

(4) 수업에 집중되지 않는 이유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소수 혹은 거의 집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교사의 87.5%는 학생들의 ‘학습의욕 부족’을 탓한다. 반면 학생들은 학습의욕 부족(44.3%)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이해하지 못해(20.7%), 싫어하는 과목(14.4%), 학교 외 배움(6.9%) 등의 순으로 수업을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학부모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표 IV-4〉)(〈부록 표IV-2〉 참조).

여기에서 교사와 학생 집단이 ‘학습의욕 부족’이라고 답한 것에 주목하여야 할 대목이다. ‘학습의욕 부족’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 심층적인 조사가 요구되나 학생들이 교육내용의 수준과 교수 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IV-4〉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학교외 배움	이해하지 못해	싫어하는 과목	분위기 산만	학습의욕 부족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2(6.9)	36(20.7)	25(14.4)	24(13.8)	77(44.3)	174(100.0)	47.485***
학부모	11(9.2)	19(16.0)	10(8.4)	21(17.6)	58(48.7)	119(100.0)	
교사	4(5.6)	2(2.8)	0(0.0)	3(4.2)	63(87.5)	72(100.0)	
계	27(7.4)	57(15.6)	35(9.6)	48(13.2)	198(54.2)	365(100.0)	

\*\*\* :  $p < .001$

(5) 학생들의 수업 이해 정도

수업 집중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는 수업의 이해도에 대한 인식차이와 연결된다. 교사들의 16.3%는 대부분의 학생이, 66.3%는 '대략 반정도'의 학생이 이해한다고 하였다. '소수의 학생만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15.7%이며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진단한 수업시간의 이해 정도는 교사들에 비하여 낮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수업의 이해 정도는 '대부분의 학생이 이해한다'(2.5%), '반정도 이해한다'(61.1%), '소수만 이해'(32.1%),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4.2%)로 나타났다(<표 IV-5>)( <부록 표IV-3> 참조).

<표 IV-5> 학생들의 수업이해 정도 (단위 : 명, %)

구분	대부분 이해	반정도 이해	소수만 이해	거의 이해못함	계(%)	유의도 ( $\chi^2$ )
학생	9(2.5)	217(61.1)	114(32.1)	15(4.2)	355(100.0)	62.389***
학부모	29(8.9)	195(59.8)	93(28.5)	9(2.8)	326(100.0)	
교사	58(16.3)	236(66.3)	56(15.7)	6(1.7)	356(100.0)	
계	96(9.3)	648(62.5)	263(25.4)	30(2.9)	1,037(100.0)	

\*\*\* :  $p < .001$

(6) 수업의 장애 요인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그렇다면 학교 수업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 <표 IV-6>는 그 결과를 정리한 교차분석표이다.

교사들이 수업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학습 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 때문'(53.8%)이다.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 과다'(27.0%),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교과서)'(18.6%)의 순으로 지적한다.

하지만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교과서)'에 그

원인을 두는 학생은 48.2%, 학부모는 45.0%이다. 그 다음에는 ‘학습자체에 무관심한 학생’(학생, 35.7%; 학부모 38.6%), ‘학급당 학생 수 과다’(학생, 11.0%; 학부모, 11.4%)의 순으로 그 이유를 지적한다.

〈표 IV-6〉 학교 수업에 가장 장애 요인 (단위 : 명, %)

구분	학생수 과다	교육과정 문제	무관심한 학생	교사의 준비부족	계(%)	유의도 ( $\chi^2$ )
학생	43(11.0)	189(48.2)	140(35.7)	20(5.1)	392(100.0)	120.117***
학부모	39(11.4)	154(45.0)	132(38.6)	17(5.0)	342(100.0)	
교사	99(27.0)	68(18.6)	197(53.8)	2(0.5)	366(100.0)	
계	181(16.5)	411(37.4)	469(42.6)	39(3.5)	1,100(100.0)	

\*\*\* :  $p < .001$

(7)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호응 정도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IV-7>이다.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고 64.2%가 답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 달리 22.6%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학생도 26.4%이다.

〈표 IV-7〉 수업 중에 교사에 대한 호응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6(1.5)	83(21.1)	201(51.0)	91(23.1)	13(3.3)	394(100.0)	151.362***
학부모	16(4.7)	113(33.0)	159(46.5)	49(14.3)	5(1.5)	342(100.0)	
교사	44(12.1)	190(52.1)	94(25.8)	32(8.8)	5(1.4)	365(100.0)	
계	66(6.0)	386(35.1)	454(41.2)	172(15.6)	23(2.1)	1,101(100.0)	

\*\*\* :  $p < .001$

## 2) 생활지도

### (1) 학교 규율이나 예절 지도의 필요성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이나 예절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교사의 97.9%, 학부모 86.6%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학생의 경우 61.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학교 규율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각 주체별로 그 차이를 보인다(〈표 IV-8〉).

이런 결과는 첫째, 규율의 집행자와 대상자라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 규범 준수에 대한 의식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 IV-8〉 학교 규율이나 예절 지도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08(27.6)	134(34.3)	112(28.6)	31(7.9)	6(1.5)	391(100.0)	
학부모	211(61.5)	86(25.1)	36(10.5)	9(2.6)	1(0.3)	343(100.0)	230.959***
교사	271(74.5)	85(23.4)	6(1.6)	2(0.5)	0(0.0)	364(100.0)	
계	590(53.7)	305(27.8)	154(14.0)	42(3.8)	7(0.6)	1,098(100.0)	

\*\*\* :  $p < .001$

### (2) 규율 제정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학교 규율을 제정할 때,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우선 학부모의 참여여부에 대한 태도로서, 교사들의 63.1%, 학부모의 53.4%, 학생의 46.0%가 찬성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참여여부는 학생의 88.0%, 교사의 71.4%, 학부모의 70.6%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표 IV-9〉, 〈표 IV-10〉).

왜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통한 규율 제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원하는가? 규율을 집행하는 교사들이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보호자인 학부모와 규율의 대상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규율을 만들어지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9〉 학교규율 제정시 학부모의 의견 반영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48(12.3)	131(33.7)	136(35.0)	56(14.4)	18(4.6)	389(100.0)	
학부모	75(21.9)	108(31.5)	108(31.5)	44(12.8)	8(2.3)	343(100.0)	50.453***
교사	49(13.5)	180(49.6)	96(26.4)	36(9.9)	2(0.6)	363(100.0)	
계	172(15.7)	419(38.3)	340(31.1)	136(12.4)	28(2.6)	1,095(100.0)	

\*\*\* : p < .001

〈표 IV-10〉 학교 규율 제정시 학생들의 참여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260(66.5)	84(21.5)	33(8.4)	9(2.3)	5(1.3)	391(100.0)	
학부모	103(29.9)	140(40.7)	72(20.9)	24(7.0)	5(1.5)	344(100.0)	188.288***
교사	77(21.0)	185(50.4)	72(19.6)	26(7.1)	7(1.9)	367(100.0)	
계	440(39.9)	409(37.1)	177(16.1)	59(5.4)	17(1.5)	1,102(100.0)	

\*\*\* : p < .001

### (3) 학생들의 규범의식과 타인의 배려 정도

“학생들은 규범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교사의 87.7%, 학부모의 61.7%, 학생의 40.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IV-11〉).

<표 IV-11> 학생들의 규범의식과 타인의 배려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32(8.1)	128(32.5)	151(38.3)	60(15.2)	23(5.8)	394(100.0)	211.751***
학부모	67(19.5)	145(42.2)	99(28.8)	21(6.1)	12(3.5)	344(100.0)	
교사	129(35.1)	193(52.6)	41(11.2)	4(1.1)	0(0.0)	367(100.0)	
계	228(20.6)	466(42.2)	291(26.3)	85(7.7)	35(3.2)	1,105(100.0)	

\*\*\* :  $p < .001$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사집단인 경우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4) 학교 규칙 준수 정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하여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표 IV-12> 학생들의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단위 : 명, %)

구분	잘 지키는편	어느 정도.	보통 이다	별로 안지킴	거의 안지킴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3(3.3)	109(27.6)	116(29.4)	145(36.7)	12(3.0)	395(100.0)	37.240***
학부모	35(10.3)	127(37.2)	75(22.0)	99(29.0)	5(1.5)	341(100.0)	
교사	21(5.7)	139(38.0)	69(18.9)	130(35.5)	7(1.9)	366(100.0)	
계	69(6.3)	375(34.0)	260(23.6)	374(33.9)	24(2.2)	1,102(100.0)	

\*\*\* :  $p < .001$

이를 정리한 것은 <표 IV-12>로서, ‘잘 지키는 편이다.’와 ‘어느 정도 지키는 편이다.’를 합친 응답을 보면 학생은 30.9%, 학부모는 47.5%,



교사는 43.7%를 차지한다. 반면, '별로 안 지킴'과 '거의 안 지킴'을 합친 응답분포를 보면, 학생은 39.7%, 학부모는 30.6%, 교사는 37.4%가 응답하였다(〈부록 표Ⅳ-4〉 참조).

(5)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

학교 규율 준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왜 그런가를 질문하였고, 응답결과 <표 Ⅳ-13>이다.

<표 Ⅳ-13>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구분	동떨어진 규율	일관성없는 규율	엄격한 규율	선생님의 엄격하지 않음	계(%)	유의도 ( $\chi^2$ )
학생	65(41.4)	16(10.2)	52(33.1)	24(15.3)	157(100.0)	69.693***
학부모	34(32.4)	25(23.8)	16(15.2)	30(28.6)	105(100.0)	
교사	86(64.2)	24(17.9)	2(1.5)	22(16.4)	134(100.0)	
계	185(46.7)	65(16.4)	70(17.7)	76(19.2)	396(100.0)	

\*\*\* :  $p < .001$

조사대상 전체가 학교 규율이 학생들의 문화나 정서와 동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부록 표Ⅳ-5〉 참조).

그런데 두 번째로 들고 있는 이유는 집단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기 때문', 교사들은 '규율을 일관성이 있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6) 학생 체벌의 허용 여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교사들은 94.3%로서 절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학부모의 65.4%, 학생의 39.5%만이 찬성한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은 학생의 25.2%, 학부모의 12.8%, 교사의 5.2%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Ⅳ-14〉)(〈부록 표Ⅳ-6〉 참조).

〈표 IV-14〉 학생 체벌의 허용 여부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48(12.2)	107(27.3)	138(35.2)	60(15.3)	39(9.9)	392(100.0)	284.601 ***
학부모	90(26.2)	135(39.2)	75(21.8)	29(8.4)	15(4.4)	344(100.0)	
교사	190(51.8)	156(42.5)	18(4.9)	1(0.3)	2(0.5)	367(100.0)	
계	328(29.7)	398(36.1)	231(20.9)	90(8.2)	56(5.1)	1,103(100.0)	

\*\*\* : p < .001

### 3) 교사 - 학생 상호 이해

####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열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학생의 43.6%, 학부모의 41.0%, 교사의 8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IV-15〉).

〈표 IV-15〉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열의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37(9.5)	133(34.1)	142(36.4)	54(13.8)	24(6.2)	390(100.0)	212.627 ***
학부모	40(11.8)	99(29.2)	156(46.0)	34(10.0)	10(2.9)	339(100.0)	
교사	137(37.5)	165(45.2)	55(15.1)	8(2.2)	0(0.0)	365(100.0)	
계	214(19.6)	397(36.3)	353(32.3)	96(8.8)	34(3.1)	1,094(100.0)	

\*\*\* : p < .001

#### (2)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반응

“선생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46.7%, 학부모의 36.1%, 교사의 31.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IV-16〉).

〈표 IV-16〉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대응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69(17.6)	114(29.1)	140(35.7)	58(14.8)	11(2.8)	392(100.0)	92.777***
학부모	27(7.9)	96(28.2)	135(39.6)	71(20.8)	12(3.5)	341(100.0)	
교사	5(1.4)	108(29.7)	115(31.6)	101(27.7)	35(9.6)	364(100.0)	
계	101(9.2)	318(29.0)	390(35.6)	230(21.0)	58(5.3)	1,097(100.0)	

\*\*\* : p < .001

(3) 학생 의식과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

“선생님들은 학생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12.6%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부모의 29.6%, 교사의 55.6%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학생의 47.9%, 교사는 6.8%로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간에 상당한 의식 차이가 나타났다(〈표 IV-17〉)(〈부록 표IV-7〉 참조).

〈표 IV-17〉 학생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반응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1(2.8)	38(9.7)	154(39.5)	126(32.3)	61(15.6)	390(100.0)	265.564***
학부모	18(5.3)	83(24.3)	176(51.5)	53(15.5)	12(3.5)	342(100.0)	
교사	33(9.0)	171(46.6)	138(37.6)	25(6.8)	0(0.0)	367(100.0)	
계	62(5.6)	292(26.6)	468(42.6)	204(18.6)	73(6.6)	1,099(100.0)	

\*\*\* : p < .001

(4)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반응

“요즘 학생들은 이기적, 개인적으로 행동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교사의 85.8%, 학부모의 6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학생들 스스로도

40.3%가 이기적, 개인적으로 행동한다고 응답하였다(〈표 IV-18〉).

〈표 IV-18〉 학생들의 행동 변화에 대한 반응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23(5.9)	135(34.4)	139(35.4)	69(17.6)	27(6.9)	393(100.0)	220.591***
학부모	78(22.7)	130(37.9)	99(28.9)	27(7.9)	9(2.6)	343(100.0)	
교사	144(39.5)	169(46.3)	42(11.5)	10(2.7)	0(0.0)	365(100.0)	
계	245(22.3)	434(39.4)	280(25.4)	106(9.6)	36(3.3)	1,101(100.0)	

\*\*\* :  $p < .001$

(5)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정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IV-19〉)(〈부록 표IV-8〉 참조)는 그 결과를 정리한 응답분포이다. 교사의 74.8%, 학부모의 60.6%, 학생의 40.4%가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의 평가가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차이는 교사와 학생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9〉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정도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5(1.3)	151(39.1)	230(59.6)	386(100.0)	96.810***
학부모	15(4.4)	190(55.9)	134(39.4)	340(100.0)	
교사	17(4.7)	256(70.1)	92(25.2)	365(100.0)	
계	38(3.4)	597(54.7)	456(41.8)	1,092(100.0)	

\*\*\* :  $p < .001$

(6)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점

학교교육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응답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IV-20> )( <부록 표IV-9> 참조)이다.

<표 IV-20>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 이해 (단위 : 명, %)

구분	학습기능의 비효율성	학교공동체 의식파괴	가치관변화	학교의 비민주성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12(28.8)	32(8.2)	177(5.5)	68(7.5)	389(100.0)	103.993***
학부모	76(22.6)	45(13.4)	184(4.8)	31(9.2)	336(100.0)	
교사	38(10.6)	76(21.3)	232(5.0)	11(3.1)	357(100.0)	
계	226(20.9)	153(14.1)	593(4.8)	110(10.2)	1,082(100.0)	

\*\*\* :  $p < .001$

조사대상이 전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이다. 그 다음은 '학습기능의 비효율성', '학교공동체의식의 파괴', '학교의 비민주성'의 순으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주체가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부터 지적하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학부모와 학생은 '학습기능의 비효율성'을 교사들은 '학교공동체의식의 파괴' 지적한다.

## 2. 教育權에 관한 理解

### 1) 教育權의 성격

#### (1) 教育權의 개념 이해

교육권에 대해 각 주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

하여, “교육권은 인권에 바탕을 두어 행사되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표 IV-2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교사 95.9%, 학부모 73.5%, 학생 66.0%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 이해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을 주목할 수 있다.

<표 IV-21> 교육권의 개념 이해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48(37.9)	110(28.1)	116(29.7)	13(3.3)	4(1.0)	391(100.0)	112.857***
학부모	141(41.1)	111(32.4)	73(21.3)	17(5.0)	1(0.3)	343(100.0)	
교사	203(55.5)	148(40.4)	14(3.8)	1(0.3)	0(0.0)	366(100.0)	
계	492(44.7)	369(33.5)	203(18.5)	31(2.8)	5(0.5)	1,100(100.0)	

\*\*\* :  $p < .001$



## (2) 교육권 행사의 주체

“교육권을 행사할 때 누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교육권 행사의 주체의 우선 순위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하였고 <표 IV-22>는 그 응답분포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교육권 행사의 주체의 1순위는 첫째, 학생, 둘째, 교사, 셋째 학부모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순위에서 응답한 순서는 첫째, 교사, 둘째, 학생, 셋째, 학부모이고, 마지막으로 3순위의 첫째는 학부모, 둘째, 교사, 셋째는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들 순위별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으로 환산하여 교육권 행사의 주체의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권 행사의 첫 번째 주체는 학생, 그 다음으로 교사, 세 번째로 학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2〉 교육권 행사의 주체

(단위 : 명, %,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
학생	579(52.4)	316(28.7)	149(13.5)	2.27
교사	404(36.6)	471(42.8)	172(15.6)	2.10
학부모	49(4.4)	252(22.9)	682(62.0)	1.20
학교설립자	7(0.6)	14(1.3)	13(1.2)	0.05
지방자치단체	3(0.3)	19(1.7)	16(1.5)	0.05
국가	63(5.7)	28(2.5)	68(6.2)	0.28
계	1,105(100.0)	1,100(100.0)	1,100(100.0)	

\* 교육권의 행사주체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이 선택한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평균을 구하였다. 그래서 평균점수의 범위는 0~3 점이 된다.

### (3)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 인식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라는 질문에 교사의 91.8%, 학부모의 80.2%, 학생의 63.2%가 긍정하고 있다(〈표 IV-23〉)(〈부록 표IV-10〉 참조).

〈표 IV-23〉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 인식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02(26.0)	146(37.2)	113(28.8)	25(6.4)	7(1.8)	393(100.0)	127.813***
학부모	153(44.6)	122(35.6)	62(18.1)	5(1.5)	1(0.3)	343(100.0)	
교사	214(58.3)	123(33.5)	26(7.1)	4(1.1)	0(0.0)	367(100.0)	
계	469(42.5)	391(35.4)	201(18.2)	34(3.1)	8(0.7)	1,103(100.0)	

\*\*\* : p < .001

## 2) 교사의 교육권

### (1)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부모와 교사간에 상당한 이해 차가 있다(<표 IV-24>)( <부록 표IV-11> 참조).

학생의 61.2%, 학부모의 66.9%, 교사의 16.7%가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의 59.3%, 학생의 35.3%, 학부모의 31.3%가 ‘그저그렇다.’라고 답하고 있다. 곧 교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4>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 (단위 : 명, %)

구분	매우 존중	존중한다	그저그렇다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28(7.1)	213(54.1)	139(35.3)	14(3.6)	394(100.0)	258.441***
학부모	35(10.1)	196(56.8)	108(31.3)	6(1.7)	345(100.0)	
교사	4(1.1)	61(16.7)	217(59.3)	84(23.0)	366(100.0)	
계	67(6.1)	470(42.5)	464(42.0)	104(9.4)	1,105(100.0)	

\*\*\* :  $p < .001$

## (2) 교사 교육권의 의의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라는 질문에는 교사 97.2%, 학부모 85.4%, 학생 72.3%가 ‘그렇다.’고 답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표 IV-25> ).

<표 IV-25> 교사 교육권의 의의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28(32.7)	155(39.6)	92(23.5)	9(2.3)	7(1.8)	391(100.0)	143.982***
학부모	178(51.9)	115(33.5)	44(12.8)	5(1.5)	1(0.3)	343(100.0)	
교사	260(71.2)	95(26.0)	10(2.7)	0(0.0)	0(0.0)	365(100.0)	
계	566(51.5)	365(33.2)	146(13.3)	14(1.3)	8(0.7)	1,099(100.0)	

\*\*\* :  $p < .001$



### 3) 학부모의 교육권

#### (1) 교육과정 결정의 학부모 참여

학부모들이 수업방법, 교육방법, 교재의 선정, 교육과정 선정 등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였고, <표 IV-26>은 그 분석결과이다.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다소 그렇다(36.8%)', '보통이다(30.7%)', '매우 그렇다(14.9%)'의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는 '다소 그렇다.' 교사들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6> 교육과정 결정의 학부모 참여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69(17.6)	158(40.2)	111(28.2)	43(10.9)	12(3.1)	393(100.0)	32.671***
학부모	66(19.4)	121(35.5)	96(28.2)	48(14.1)	10(2.9)	341(100.0)	
교사	29(7.9)	126(34.3)	131(35.7)	63(17.2)	18(4.9)	367(100.0)	
계	164(14.9)	405(36.8)	338(30.7)	154(14.0)	40(3.6)	1,101(100.0)	

\*\*\* :  $p < .001$

#### (2)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약화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정도에 대해 교사의 70.3%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부모의 54.1%도 전에 비해 약해졌다고 느끼고 있다(<표 IV-27>)( <부록 표IV-12> 참조).

<표 IV-27>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약화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43(11.0)	111(28.3)	186(47.4)	42(10.7)	10(2.6)	392(100.0)	81.294***
학부모	59(17.3)	126(36.8)	115(33.6)	40(11.7)	2(0.6)	342(100.0)	
교사	79(21.7)	177(48.6)	86(23.6)	20(5.5)	2(0.5)	364(100.0)	
계	181(16.5)	414(37.7)	387(35.2)	102(9.3)	14(1.3)	1,098(100.0)	

\*\*\* :  $p < .001$

### (3)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학교운영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의 68.3%, 교사의 57.5%, 학생의 54.4%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곧 학교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학교경영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V-28〉).

〈표 IV-28〉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76(19.4)	137(35.0)	144(36.8)	30(7.7)	4(1.0)	391(100.0)	28.550***
학부모	97(28.8)	133(39.5)	79(23.4)	22(6.5)	6(1.8)	337(100.0)	
교사	59(16.1)	152(41.4)	120(32.7)	30(8.2)	6(1.6)	367(100.0)	
계	232(21.2)	422(38.5)	343(31.3)	82(7.5)	16(1.5)	1,095(100.0)	

\*\*\* :  $p < .001$

## 4) 학생의 교육권

### (1) 학생의 권리 이해

“학생은 신체·복장·표현 등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78.7%, 학부모의 60.7%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지만, 59.2%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표 IV-29〉)(〈부록 표IV-13〉 참조). 곧 학생은 자신들의 외모 등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행동하기 원하는 반면,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자 하는 태도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표 IV-29> 학생의 권리 이해

(단위 :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39(35.3)	94(23.9)	99(25.1)	45(11.4)	17(4.3)	394(100.0)	372.091***
학부모	24(7.0)	49(14.2)	62(18.0)	113(32.8)	96(27.9)	344(100.0)	
교사	10(2.7)	25(6.8)	43(11.7)	142(38.8)	146(39.9)	366(100.0)	
계	173(15.7)	168(15.2)	204(18.5)	300(27.2)	259(23.5)	1,104(100.0)	

\*\*\* : p < .001

(2)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갈등 내용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갈등은 '진로, 진학문제'를 들고 있지만, 그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두 번째의 갈등으로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지도',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우관계'를 꼽고 있다(<표 IV-30>).



<표 IV-30>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갈등 내용

(단위 : 명, %)

구분	진로진학 문제	교우관계	수업내용, 방법	선생님과 의 관계	학교의 생활지도	계(%)	유의도 ( $\chi^2$ )
학생	142(36.1)	56(14.2)	54(13.7)	40(10.2)	101(25.7)	393(100.0)	83.293***
학부모	156(46.0)	66(19.5)	47(13.9)	27(8.0)	43(12.7)	339(100.0)	
교사	160(44.9)	97(27.2)	16(4.5)	3(0.8)	80(22.5)	356(100.0)	
계	458(42.1)	219(20.1)	117(10.8)	70(6.4)	224(20.6)	1,088(100.0)	

\*\*\* : p < .001

### 3. 學校教育에 대한 理解와 教育權과의 關係

#### 1) 학교교육의 이해에 대한 각 하위요인 관계<sup>61)</sup>

학교교육의 이해에 대한 각 하위요인 관계를 피어슨의 상관관계를 통해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IV-31>이다.

<표 IV-31> 학교교육의 이해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관계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사-학생의 상호 이해	학교 교육의 이해
교과지도	1.000	0.399**	0.162**	0.754**
생활지도		1.000	0.414**	0.801**
교사-학생 상호 이해			1.000	0.663**
학교 교육의 이해				1.000

\* :  $p < .05$ , \*\* :  $p < .01$

이를 상관관계의 정도<sup>62)</sup>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관계는 교과지도와 교사-학생 상호 이해의 관계이다.

둘째,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한 관계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생활지도와 교사-학생 상호 이해의 관계이다.

셋째, 상관관계가 있고 그 정도가 다소 높은 관계는 교사-학생 상호

61) 여기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학교교육의 이해에 대한 하위영역은 교과지도(문항 1번), 생활지도(문항 4, 5번), 교사-학생의 상호 이해(문항 8)이다.

62) 상관관계 계수의 해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0.000 ~ 0.200 :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 0.200 ~ 0.400 : 상관관계가 있기는 하나 약하다.
- 0.400 ~ 0.700 :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
- 0.700 ~ 0.900 : 상관관계가 높다
- 0.900 ~ 1.000 :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정대연(1991), 『사회통계학』, 백산서당, p.167

이해와 학교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 관계이다.

넷째, 상관관계가 있고 그 정도가 높은 관계는 교과지도와 학교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 생활지도와 학교교육의 실제에 대한 이해의 관계이다.

## 2) 교육권에 대한 이해의 각 하위요인간의 관계

교육권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주체별로 나누어 교사의 교육권(문항 16번), 학부모의 교육권(문항 14, 15, 17번), 학생의 교육권(문항 18번)으로 나누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표 IV-32 >).

이를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 $r=0.061$ ),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 $r=-0.162$ )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은 정적 관계이나,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의 관계는 부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곧 서로 거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은 상호 모순이 되는 관계가 아닌데 반해, 교사와 학생의 교육권은 상반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사의 교육권이 신장될수록 학생의 교육권은 약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계는 서로 정적인 관계로서 그 정도가 약한 관계로 나타난다. 곧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의 상관관계 계수가 0.305로서,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신장될수록 학부모의 교육권도 신장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V-32> 교육권에 대한 각 하위요인과의 관계

	교사의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교육권
교사권의 교육권	1.000	0.305**	0.162**
학부모의 교육권		1.000	0.061*
학생의 교육권			1.000

\* :  $p < .05$ , \*\* :  $p < .01$

### 3)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424로서,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관계라 할 수 있다( $p < .01$ ).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가 긍정적일수록 교육권에 대한 이해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표 IV-33> )

<표 IV-33>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

	학교교육의 이해	교육권
학교교육의 이해	1.000	0.424**
교육권		1.000

\*\* :  $p < .01$

## V. 要約 및 結論

### 1. 要約

본 연구는 제주도 학생·교사·학부모의 중등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고, 조사·분석함으로써 교육 주체간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에 서술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도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각 주체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둘째, 교육권에 대한 각 주체간의 이해는 어떠한가?

셋째, 중등학교 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음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의 하위 요인으로 <교과지도, 생활지도, 교사-학생 상호 이해> 를, 둘째 교육권에 관한 하위 요인으로 <교육권의 성격, 학생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분석된 자료를 종합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지도> 의 하위영역 중에서, 첫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는 학생의 선택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학생, 학부모(77.1%, 77.4%)는 교사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둘째, ‘교과 외 교육활동(예,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재량활동)비중확대’에 대해서는 학생(70.3%)이 교사·학부모보다 더 적극적이고, 셋째,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정도’에 대해 교사(80.0%)가 학생과 학부모보다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넷째, ‘수업에 집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습의욕의 부족’을 우선시 하나, 교사(87.5%), 학생(44.3%), 학부모(48.7%)의

차이가 있고, 다섯째, ‘학생들의 수업이해 정도’에 대해서는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보다 높게 평가하고, 여섯째, ‘수업의 장애요인’에서 교사는 ‘무관심한 학생’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과정 문제’를 첫째 요인으로 꼽고, 일곱째,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호응정도’는 교사집단(64.2%)이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지도>의 하위영역 중에서, 첫째, ‘학교규율이나 예절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97.9%)가 학부모와 학생에 비해 높고, 둘째, ‘규율 제정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에 대해 대체로 학생의 참여를 인정하며, 셋째, ‘학생들의 규범의식과 타인의 배려 정도’에 대해 교사(87.7%)가 학부모와 학생보다 부정적이고, 넷째, ‘학생의 학교 규칙 준수 정도’에 대해 학생(30.9%) 스스로가 교사, 학부모보다 낮게 평가하고, 그 이유는 ‘학생들의 문화나 정서와 동떨어진 것’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다섯째, ‘학생 체벌’에 대해 교사(94.3%)가 학부모와 학생에 비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한편 <교사-학생 상호 이해>의 하위영역 중에서, 첫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열의’에 대해 교사 스스로는 높이 평가하나, 학생, 학부모(43.6%, 41.0%)는 그렇지 않고, 둘째,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사의 반응’에 대해 대체로 모두가 소극적인 평가를 내리고, 셋째, ‘학생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교사의 이해정도’에 대해서 교사는 ‘그렇다.’ 학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매우 대조적으로 평가하며, 넷째, ‘학생들의 행동이 이기적, 개인적이다’에 대해 교사(85.8%), 학부모(60.6%), 학생(40.3%)의 순으로 그렇다고 응답하며, 다섯째,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해 교사(74.8%), 학부모(60.6%), 학생(40.4%)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낮아지고, 여섯째, 학교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모두가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그 다음으로 교사들은(21.3%) ‘학교공동체의식의 파괴’ 학부모(22.6%)와 학생(28.8%)은 ‘학습기능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 <교육권에 대한 이해>에 관한 하위영역 중에서, 첫째, ‘교육권은 인권에 바탕을 두어 행사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각 주체가 차



이(학생66.0%, 학부모73.5%, 교사95.7%)를 보이고, 둘째, 교육권 행사의 주체에 대해서는 순위별 응답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으로 환산하여 교육권 행사의 주체의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권 행사의 첫 번째 주체는 학생, 그 다음으로 교사, 세 번째로 학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권이 행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이고,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한 학교 경영에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참여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육 주체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61.2%, 66.9%)는 교사들을 '존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대부분(82.3%)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사-학부모간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도 대부분 교사(70.3%)는 '전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라고 느끼는 반면 학부모는 '반 정도만 전에 비해 약해졌다.'라고 느끼고 있고, 학생의 신체·복장·표현에 대하여 교사·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교사, 학부모(78.7%, 60.7%)는 부정적으로, 학생(59.2%)은 당연한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갈등의 주요 내용은 '진로·진학 문제'로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고, 교사, 학부모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지도 문제'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우 관계'를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교육의 이해에 대한 각 하위요인 상관관계는, 첫째, 교과지도와 교사-학생 상호 이해의 관계는 거의 없고,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한 관계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생활지도와 교사-학생 상호 이해의 관계이다.

둘째, 상관관계가 있고 그 정도가 다소 높은 관계는 교사-학생 상호

이해와 학교교육의 이해 관계이고, 그 정도가 높은 관계는 교과지도와 학교교육의 이해, 생활지도와 학교교육의 이해 관계이다.

다음으로 교육권의 각 하위요인간 상관관계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은 정적 관계이나,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의 관계는 부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교사의 교육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의 관계는 서로 정적인 관계로서 그 정도가 약한 관계로 나타난다.

끝으로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상관관계 계수는 0.424로서, 학교교육의 이해와 교육권과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은 관계라 할 수 있다.

## 2. 結論



본 연구는 제주도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확인하고, 조사·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육주체로서 학생·학부모·교사 간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에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태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공교육이 새롭게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은 주체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교사들은 스스로 사회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의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교사집단 스스로가 사회적 평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은 신장되는 반면, 교사의 교육권은 축소 혹은 약화되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학교위기’는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예견된 결과이다. 따라서 위기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의 질 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 구성주체들의 의견수렴의 활성화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별로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셋째, 학생의 기본적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과 확보를 위해 각 주체간 협력 체제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넷째, 교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인정과 교육전문가로서 교사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해결하지 않고, 현재 한국 학교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의 규명이 아니라 이해에 대한 조사 연구로 사실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꾸준한 논의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강명구(1999), 교사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강인수(1986), 학생·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강인수(1989), 「교육법 연구」, 서울: 문음사.
- 강인수(1998), “교원의 교육권의 정당성과 한계”, 「제3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 보고서」, 미출판 서울대학교교육행정연구원.
- 김경희 외(1999), 「교육학」, 학지사.
- 김관수(1996),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김낙운(1986), 「교육법 해설」, 서울: 하서출판사.
- 김대현, 김임용 역(1991), 「교육과 권리」, 양서원.
- 김동춘(1999), 한국의 지배 질서와 학급 붕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고서.
- 김민(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연구 제3권, 제2호」, 한국교육인류학회.
- 김성열(2001), “교육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학교분쟁의 해결 전략”, 「제120차 학술대회」 미출판 한국교육행정학회 발표자료집.
- 김순자(1989), 교사·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인식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화 외(1997),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 1945-1995,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주경란(1986), 「학교제도」,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래(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 김정래(1998), “교육권의 철학적 분석 및 정당화”, 「한국교육 제25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경(1997), “한국교육, 존재 자체의 위기 그리고 대안”, 「교과연구 통권 제11호」, 통일시대교육연구소.
- 김철호(1989), 한국교원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숙 외(1999),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노기호(1998), 교원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노종희(1996), “교육개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제14권 제3호」, 교육행정학연구.
- 박병석(1997),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진(1990), 교사·학생의 교육권의 법리와 현장 적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종근, 이미나(1988), 「한국교육의 실체」, 교육과학사.
- 서울대학교(1999), 「교육학 대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하우동설.
- 석태종(1991), 「학교교육론」, 교육과학사.
- 신현식(1990), 교육기본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성민선(1998), “학교교육에서의 인권”, 「제3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 보고서」, 미출판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구원.
- 안기성(1989), 「교육법학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양진건(2000), 「제주교육 행정사」, 제주문화.
- 엄기형(1999), “학교붕괴 현상의 비판적 이해-학교의 붕괴이지 교육의 붕괴는 아니다-”, 미 출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오만록(2001), 「학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형설출판사.
- 유인종(1992), 「한국교육의 전통과 개혁」, 도서출판 창.
- 윤정일(1999). “학교교육 붕괴의 종합진단과 대책”, 「제33회 교육정책 토론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 윤철경 외(1999), 한국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연구보고,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돈희(1993), 「교육적 경험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이상세(1990), 교육권의 이론적 근거와 구조 탐색,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순형(1989), 「교육적 사회론」, 양서원.
- 이영덕(1969), 「교육의 과정」, 배영사.
- 이완정(1986), 「교육법의 이론과 실상」, 문음사.
- 이정숙(1996), 학생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재(1999), 「교육지도자」, 정범모 외,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서울 : 민음사
- 이종태 외(2000),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기(1998),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연구보고, 한국교육개발원.
- 장익수(1983),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전종호(1999), 학교붕괴현상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의식 조사 연구, 연구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 정운석(1997),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제4회 관악교육정책 포럼(1999), “교원 정년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 과제”, 미출판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구원.
- 최상근(1999), “학생의 특성·정보에 대한 교사 의식 및 활용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 제26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
- 최천연(1997), 교육자치체에 있어서 관련주체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2000), 교육인식의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출판 세미나보고서.
- 한국교육개발원(1998),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허병기(1998), 『교육의 가치와 실천』, 교육과학사.
- 허병기(2001), “수업과 학교장 지도성”, 「120차 학술대회」, 미출판 한국교육행정학회.
- Sergiovanni, T(1994), *Building Community in School*,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Silberman, C, E(1970), *Crisis in the Classroom : the Remaking of American Education*, New York: Random House.
- Illich, I,(1971), *Deschooling Society*, New York: Haper and Row.

<Abstract>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right and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subject in School educa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Secondary School in Jeju -**

**Lee Tae-woo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recovery of trust by identifying,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rights and the understanding of secondary school education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in Jeju-do. And the subjects which were set up and exam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What's the understanding of each educational subject about school education in Jeju-do?
- 2) What's the understanding of each educational subject about educational right?
- 3) What's th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al rights and understanding of school education?

To achieve the above goal, first of all, 397 students, attending 22 schools, 344 parents and 367 teachers in Jeju-do were asked some questions about some present educational matters through questionnaires. and 1,108 questionnaires in total were collected and then analyzed by the SPSS · WIN program.

The concrete results drawn from such a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experientially that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educational right and school education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who are the main subjects of education. On the whole, this study showed that they have firm attitude in standing by and speaking for their position.

Second, educational subjects should make efforts so that public education can be taken root newly with rapid changes in society.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students show sensitive response toward social changes, they still didn't receive social changes independently, based on value judgements, and teachers also have great difficulties because of the defective education system to accept social changes.

Third, teachers have negative viewpoints about social recognition. To be sure, it is natural that they think so because of changed social recognition about teachers as society changes. But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educational rights of teachers decreased while the educational rights of students and parents extended.

Based on the above analysis, 'School crisis' is expected result that derived from unsuitable preparation to cope with the change of students' way of thinking and action. S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School crisis', in this study, some suggestion that the



work be started at once are showed as the followings:

First, some solution to accomplish normal class should be found by improving the quality of class.

Second, the exaction of the opinion of educational subject should be activated. and some systematic aids, which can extend the autonomy of each school, should be given at once.

Third, the improvement of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stressed and concerned between each educational subject to secure students' basic right that is " Right to be educated".

Forth, various roles and rights of the teachers as experts should be recognized by the public. and the autonomy should be admitted and given to teachers.

Fifth, the absence of an effective educational policy can be indicated. Especially, the present school crisis in Korean education can't be solved without settling some educational problems centered on the preparation for an entrance examination and financial difficulty of education

Finally, this study is not a close examination of the real truth of the matter, but a research in the understanding. This is why there exist significant differences to some degree between reality and recognition of the matter. Therefore, to make up for the limits like these, the constant study and discussion about some present states of educational field should be necessary.

# 부 록

1. 배경 변인별 질문지 조사결과
2. 질문지 :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부록 표 IV-1〉 수업에 대한 학생의 집중 정도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대부분 집중	반정도 집중	소수만 집중	거의 집중안함	계(%)	$\chi^2$
학생		중학교	6(3.3)	94(51.6)	77(42.3)	5(2.7)	182(100.0)	0.019 *
		일반고	2(1.8)	69(62.2)	36(32.4)	4(3.6)	111(100.0)	
		실업고	0(0.0)	39(41.5)	48(51.1)	7(7.4)	94(100.0)	
학교 별	학부모	중학교	25(15.4)	92(56.8)	42(25.9)	3(1.9)	162(100.0)	0.009 **
		일반고	9(10.8)	46(55.4)	26(31.3)	2(2.4)	83(100.0)	
		실업고	5(5.8)	36(41.9)	43(50.0)	2(2.3)	86(100.0)	
교사		중학교	54(30.2)	102(57.0)	22(12.3)	1(0.6)	179(100.0)	0.000 ***
		일반고	49(50.0)	41(41.8)	8(8.2)	0(0.0)	98(100.0)	
		실업고	9(10.7)	34(40.5)	38(45.2)	3(3.6)	84(100.0)	
지역 별	학생	시	5(2.1)	131(54.8)	94(39.3)	9(3.8)	239(100.0)	0.615
		읍·면	3(2.0)	71(48.0)	67(45.3)	7(4.7)	148(100.0)	
	학부모	시	21(11.0)	102(53.4)	64(33.5)	4(2.1)	191(100.0)	0.951
		읍·면	18(13.0)	71(51.4)	46(33.3)	3(2.2)	138(100.0)	
	교사	시	84(39.3)	103(48.1)	26(12.1)	1(0.5)	214(100.0)	0.000 ***
		읍·면	28(19.0)	74(50.3)	42(28.6)	3(2.0)	147(100.0)	

\* : p< .05, \*\* : p< .01, \*\*\* : p< .01



〈부록 표 IV-2〉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학교외 배움	이해하지 못해	싫어하는 과목	분위기 산만	학습의욕 부족	계(%)	$\chi^2$
학생		중학교	8(10.0)	18(22.5)	11(13.8)	10(12.5)	33(41.3)	80(100.0)	0.318
		일반고	4(10.3)	9(23.1)	4(10.3)	7(17.9)	15(38.5)	39(100.0)	
		실업고	0(0.0)	9(16.4)	10(18.2)	7(12.7)	29(52.7)	55(100.0)	
학교 별	학부모	중학교	8(18.2)	8(18.2)	3(6.8)	6(13.6)	19(43.2)	44(100.0)	0.163
		일반고	0(0.0)	6(21.4)	2(7.1)	4(14.3)	16(57.1)	28(100.0)	
		실업고	3(6.5)	4(8.7)	5(10.9)	11(23.9)	23(50.0)	46(100.0)	
교사		중학교	4(16.7)	1(4.2)		2(8.3)	17(70.8)	24(100.0)	0.083
		일반고	0(0.0)	0(0.0)		0(0.0)	8(100.0)	8(100.0)	
		실업고	0(0.0)	1(2.5)		1(2.5)	38(95.0)	40(100.0)	
지역 별	학생	시	11(10.7)	21(20.4)	14(13.6)	15(14.6)	42(40.8)	103(100.0)	0.188
		읍·면	1(1.4)	15(21.1)	11(15.5)	9(12.7)	35(49.3)	71(100.0)	
	학부모	시	8(11.8)	8(11.8)	6(8.8)	8(11.8)	38(55.9)	68(100.0)	0.117
		읍·면	3(6.1)	10(20.4)	3(6.1)	13(26.5)	20(40.8)	49(100.0)	
	교사	시	3(11.1)	1(3.7)		1(3.7)	22(81.5)	27(100.0)	0.434
		읍·면	1(2.2)	1(2.2)		2(4.4)	41(91.1)	45(100.0)	

〈부록 표 IV-3〉 학생들의 수업이해 정도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대부분 이해	반정도 이해	소수만 이해	거의 이해못함	계(%)	$\chi^2$
학교별	학생	중학교	7(4.3)	102(62.6)	53(32.5)	1(0.6)	163(100.0)	0.000 ***
		일반고	2(1.9)	77(72.6)	22(20.8)	5(4.7)	106(100.0)	
		실업고	0(0.0)	38(44.2)	39(45.3)	9(10.5)	86(100.0)	
	학부모	중학교	17(10.4)	105(64.4)	39(23.9)	2(1.2)	163(100.0)	0.001 **
		일반고	7(9.5)	51(68.9)	15(20.3)	1(1.4)	74(100.0)	
		실업고	5(5.7)	38(43.7)	38(43.7)	6(6.9)	87(100.0)	
	교사	중학교	20(11.1)	143(79.4)	16(8.9)	1(0.6)	180(100.0)	0.000 ***
		일반고	31(31.3)	58(58.6)	10(10.1)	0(0.0)	99(100.0)	
		실업고	7(9.1)	35(45.5)	30(39.0)	5(6.5)	77(100.0)	
지역별	학생	시	6(2.8)	144(66.1)	59(27.1)	9(4.1)	218(100.0)	0.077
		읍·면	3(2.2)	73(53.3)	55(40.1)	6(4.4)	137(100.0)	
	학부모	시	13(6.8)	120(62.8)	53(27.7)	5(2.6)	191(100.0)	0.351
		읍·면	16(12.2)	73(55.7)	38(29.0)	4(3.1)	131(100.0)	
	교사	시	47(22.1)	144(67.6)	19(8.9)	3(1.4)	213(100.0)	0.000 ***
		읍·면	11(7.7)	92(64.3)	37(25.9)	3(2.1)	143(100.0)	

\* : p<.05, \*\* : p<.01, \*\*\* : p<.01



〈부록 표 IV-4〉 학생들의 학교 규칙 준수 정도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잘 지키는편	어느정도 보통이다	별로 안 지킴	거의 안지킴	계(%)	$\chi^2$	
학교별	학생	중학교	5(2.7)	50(27.0)	66(35.7)	58(31.4)	6(3.2)	185(100.0)	0.000***
		일반고	6(5.4)	43(38.4)	28(25.0)	32(28.6)	3(2.7)	112(100.0)	
		실업고	2(2.0)	16(16.3)	22(22.4)	55(56.1)	3(3.1)	98(100.0)	
	학부모	중학교	18(10.7)	70(41.4)	35(20.7)	43(25.4)	3(1.8)	169(100.0)	0.000***
		일반고	14(17.1)	41(50.0)	19(23.2)	8(9.8)	0(0.0)	82(100.0)	
		실업고	3(3.4)	16(18.2)	20(22.7)	47(53.4)	2(2.3)	88(100.0)	
	교사	중학교	9(4.9)	70(38.3)	32(17.5)	70(38.3)	2(1.1)	183(100.0)	0.000***
		일반고	11(11.2)	50(51.0)	21(18.8)	16(16.3)	0(0.0)	98(100.0)	
		실업고	1(1.2)	19(22.4)	16(18.8)	44(51.8)	5(5.9)	85(100.0)	
지역별	학생	시	8(3.3)	71(29.0)	73(29.8)	86(35.1)	7(2.9)	245(100.0)	0.927
		읍·면	5(3.4)	38(25.5)	43(28.9)	58(38.9)	5(3.4)	149(100.0)	
	학부모	시	20(10.2)	80(40.8)	40(20.4)	52(26.5)	4(2.0)	196(100.0)	0.496
		읍·면	15(10.6)	47(33.3)	33(23.4)	45(31.9)	1(0.7)	141(100.0)	
	교사	시	15(6.9)	93(43.1)	39(18.1)	68(31.5)	1(0.5)	216(100.0)	0.010*
		읍·면	6(4.0)	46(30.7)	30(20.2)	62(41.3)	6(4.0)	150(100.0)	

\* : p<.05, \*\*\* : p<.01

〈부록 표 IV-5〉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동떨어 진규율	일관성 없는규율	엄격한 규율	선생님의 엄격하지 않음	계(%)	$\chi^2$
학 교 별	학생	중학교	23(35.9)	8(12.5)	25(39.1)	8(12.5)	64(100.0)	0.161
		일반고	21(60.0)	1(2.9)	7(20.0)	6(17.1)	35(100.0)	
		실업고	21(36.2)	7(12.1)	20(34.5)	10(17.2)	58(100.0)	
	학부모	중학교	14(30.4)	13(28.3)	6(13.0)	13(28.3)	46(100.0)	0.983
		일반고	3(33.3)	2(22.2)	1(11.1)	3(33.3)	9(100.0)	
		실업고	17(34.7)	10(20.4)	8(16.3)	14(28.6)	49(100.0)	
교사	중학교	52(75.4)	7(10.1)	1(1.4)	9(13.0)	69(100.0)	0.141	
	일반고	11(61.1)	4(22.2)	0(0.0)	3(16.7)	18(100.0)		
	실업고	23(48.9)	13(27.7)	1(2.1)	10(21.3)	47(100.0)		
지 역 별	학생	시	42(45.2)	9(9.7)	35(37.6)	7(7.5)	93(100.0)	0.008**
		읍·면	23(36.5)	7(11.1)	16(25.4)	17(27.0)	63(100.0)	
	학부모	시	20(35.7)	12(21.4)	9(16.1)	15(26.8)	55(100.0)	0.866
		읍·면	14(30.4)	11(23.9)	6(13.0)	15(32.6)	46(100.0)	
	교사	시	42(61.8)	8(11.8)	2(2.9)	16(23.5)	68(100.0)	0.026*
		읍·면	44(66.7)	16(24.2)	0(0.0)	6(9.1)	66(100.0)	

\* : p < .05, \*\* : p < .01

〈부록 표 IV-6〉 학생 체벌의 허용 여부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chi^2$
학 교 별	학생	중학교	74(40.2)	71(38.6)	39(21.2)	184(100.0)	0.001**
		일반고	57(51.4)	29(26.1)	25(22.5)	111(100.0)	
		실업고	24(24.7)	38(39.2)	35(36.1)	97(100.0)	
	학부모	중학교	124(73.8)	23(13.7)	21(12.5)	168(100.0)	0.002**
		일반고	55(64.7)	22(25.9)	8(9.4)	85(100.0)	
		실업고	45(50.6)	29(32.6)	15(16.9)	89(100.0)	
교사	중학교	175(95.6)	8(4.4)	0(0.0)	183(100.0)	0.179	
	일반고	94(94.9)	3(3.0)	2(2.0)	99(100.0)		
	실업고	77(90.6)	7(8.2)	1(1.2)	85(100.0)		
지 역 별	학생	시	94(38.5)	87(35.7)	63(25.8)	244(100.0)	0.828
		읍·면	61(41.5)	51(34.7)	35(23.8)	147(100.0)	
	학부모	시	136(68.3)	42(21.1)	21(10.6)	199(100.0)	0.314
		읍·면	87(61.7)	32(22.7)	22(15.6)	141(100.0)	
	교사	시	204(94.0)	10(4.6)	3(1.4)	217(100.0)	0.337
		읍·면	142(94.7)	8(5.3)	0(0.0)	150(100.0)	

\* : p < .05, \*\* : p < .01

\* 그렇다(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부록 표 IV-7〉 학생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반응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chi^2$
학교별	학생	중학교	21(11.5)	83(45.6)	78(42.9)	182(100.0)	0.228
		일반고	16(14.3)	39(34.8)	57(50.9)	112(100.0)	
		실업고	12(12.5)	32(33.3)	52(54.2)	96(100.0)	
	학부모	중학교	54(32.3)	77(46.1)	36(21.6)	167(100.0)	0.010*
		일반고	30(35.7)	47(56.0)	7(8.3)	84(100.0)	
		실업고	17(19.1)	51(57.3)	21(23.6)	89(100.0)	
	교사	중학교	104(56.8)	67(36.6)	12(6.6)	183(100.0)	0.179
		일반고	57(57.6)	34(34.3)	8(8.1)	99(100.0)	
		실업고	43(50.66)	37(43.5)	5(5.9)	85(100.0)	
지역별	학생	시	31(12.8)	96(39.5)	116(47.7)	243(100.0)	0.983
		읍·면	18(12.3)	57(39.0)	71(48.6)	146(100.0)	
	학부모	시	47(23.9)	103(52.3)	47(23.9)	197(100.0)	0.003**
		읍·면	53(37.6)	71(50.4)	17(12.1)	141(100.0)	
	교사	시	124(57.1)	76(35.0)	17(7.8)	217(100.0)	0.371
		읍·면	80(53.3)	62(41.3)	8(5.3)	150(100.0)	

\* :  $p < .05$ , \*\* :  $p < .01$

\* 그렇다(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부록 표 IV-8〉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정도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계(%)	$\chi^2$
학교별	학생	중학교	5(2.7)	73(40.1)	104(57.1)	182(100.0)	0.188
		일반고	0(0.0)	44(39.3)	68(60.7)	112(100.0)	
		실업고	0(0.0)	34(37.0)	58(63.0)	92(100.0)	
	학부모	중학교	9(5.4)	95(56.9)	63(37.7)	167(100.0)	0.002**
		일반고	6(7.2)	57(67.9)	21(25.0)	84(100.0)	
		실업고	1(1.1)	38(43.7)	48(55.2)	87(100.0)	
	교사	중학교	4(2.2)	131(72.4)	46(25.4)	181(100.0)	0.000***
		일반고	11(11.1)	76(76.8)	12(12.1)	99(100.0)	
		실업고	2(2.4)	49(57.6)	34(40.0)	85(100.0)	
지역별	학생	시	4(1.7)	88(36.7)	148(61.7)	240(100.0)	0.327
		읍·면	1(0.7)	63(43.4)	81(55.9)	145(100.0)	
	학부모	시	10(5.1)	102(52.0)	84(42.9)	196(100.0)	0.224
		읍·면	5(3.6)	86(61.4)	49(35.0)	140(100.0)	
	교사	시	15(6.9)	155(71.8)	46(21.3)	216(100.0)	0.009**
		읍·면	2(1.3)	101(67.8)	46(30.9)	159(100.0)	

\* :  $p < .05$ , \*\* :  $p < .01$ , \*\*\* :  $p < .01$

〈부록 표 IV-9〉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 이해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학습기능의 비효율성	학교공동체 의식과괴	가치관변화	학교의 비민주성	계(%)	$\chi^2$
학교 별	학생	중학교	44(24.2)	8(4.4)	105(57.7)	25(13.7)	182(100.0)	0.000***
		일반고	41(36.9)	13(11.7)	33(29.7)	24(21.6)	111(100.0)	
		실업고	27(28.1)	11(11.5)	39(40.6)	19(19.8)	96(100.0)	
	학부모	중학교	45(27.3)	21(12.7)	88(53.3)	11(6.7)	165(100.0)	0.040*
		일반고	17(21.0)	5(6.2)	48(59.3)	11(13.6)	81(100.0)	
		실업고	14(15.9)	18(20.5)	48(54.5)	8(9.1)	88(100.0)	
	교사	중학교	20(11.4)	38(21.6)	112(63.6)	6(3.4)	176(100.0)	0.874
		일반고	12(12.5)	18(18.8)	64(66.7)	2(2.1)	96(100.0)	
		실업고	6(7.1)	20(23.5)	56(65.9)	3(3.5)	85(100.0)	
지역 별	학생	시	73(29.9)	21(8.6)	98(40.2)	52(21.3)	244(100.0)	0.022*
		읍·면	39(27.1)	11(7.6)	78(54.2)	16(11.1)	144(100.0)	
	학부모	시	53(27.3)	25(12.9)	97(50.0)	19(9.8)	194(100.0)	0.080
		읍·면	22(15.9)	19(13.9)	85(61.6)	12(8.7)	138(100.0)	
	교사	시	18(8.5)	46(21.8)	139(65.9)	8(3.8)	211(100.0)	0.371
		읍·면	20(13.7)	30(20.5)	93(63.7)	3(2.1)	146(100.0)	

\* : p < .05, \*\*\* : p < .01

〈부록 표 IV-10〉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권 인식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chi^2$
학교 별	학생	중학교	104(56.8)	60(32.8)	19(10.4)	183(100.0)	0.002**
		일반고	88(78.6)	18(16.1)	6(5.4)	112(100.0)	
		실업고	56(57.1)	35(35.7)	7(7.1)	98(100.0)	
	학부모	중학교	137(81.5)	27(16.1)	4(2.4)	168(100.0)	0.008**
		일반고	76(89.4)	9(10.6)	0(0.0)	85(100.0)	
		실업고	60(68.2)	26(29.5)	2(2.3)	88(100.0)	
	교사	중학교	168(91.8)	12(6.6)	3(1.6)	183(100.0)	0.201
		일반고	95(96.0)	4(4.0)	0(0.0)	99(100.0)	
		실업고	74(87.1)	10(11.8)	1(1.2)	85(100.0)	
지역 별	학생	시	161(65.7)	68(27.8)	16(6.5)	245(100.0)	0.207
		읍·면	86(58.5)	45(30.6)	16(10.9)	147(100.0)	
	학부모	시	162(81.4)	34(17.1)	3(1.5)	199(100.0)	0.705
		읍·면	109(77.9)	28(20.0)	3(2.1)	140(100.0)	
	교사	시	199(91.7)	15(6.9)	3(1.4)	217(100.0)	0.803
		읍·면	138(92.0)	11(7.3)	1(0.7)	150(100.0)	

\* : p < .05, \*\* : p < .01

주) 그렇다(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부록 표 IV-11〉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매우존중	존중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존중 하지않음	계(%)	$\chi^2$
학 교 별	학생	중학교	15(8.1)	103(55.7)	60(32.4)	7(3.8)	185(100.0)	0.030 **
		일반고	9(8.1)	67(60.4)	30(20.7)	5(4.5)	111(100.0)	
		실업고	4(4.1)	43(43.9)	49(50.0)	2(2.0)	98(100.0)	
	학부모	중학교	15(8.9)	97(57.4)	52(30.8)	5(3.0)	169(100.0)	0.003 **
		일반고	13(15.3)	56(65.9)	16(18.8)	0(0.0)	85(100.0)	
		실업고	7(7.9)	42(47.2)	40(44.9)	0(0.0)	89(100.0)	
	교사	중학교	0(0.0)	32(17.5)	108(59.0)	43(23.5)	183(100.0)	0.027 *
		일반고	4(4.0)	15(15.2)	63(63.6)	17(17.2)	99(100.0)	
		실업고	0(0.0)	14(16.7)	46(54.8)	24(28.6)	84(100.0)	
지 역 별	학생	시	13(5.3)	147(60.0)	79(32.2)	6(2.4)	245(100.0)	0.015**
		읍·면	14(9.5)	66(44.6)	60(44.6)	60(40.5)	148(100.0)	
	학부모	시	18(9.0)	113(56.8)	63(31.7)	5(2.5)	199(100.0)	0.523
		읍·면	17(12.0)	80(56.3)	44(31.0)	1(0.7)	142(100.0)	
	교사	시	4(1.9)	38(17.6)	137(63.4)	37(17.1)	216(100.0)	0.006**
		읍·면	0(0.0)	23(15.3)	80(53.3)	47(31.3)	150(1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 p < .05, \*\* : p < .01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표 IV-12〉 학부모-교사간 공동체 의식 약화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chi^2$
학 교 별	학생	중학교	67(36.8)	87(47.8)	28(15.4)	182(100.0)	0.495
		일반고	45(40.2)	51(45.5)	16(14.3)	112(100.0)	
		실업고	42(42.9)	48(49.0)	8(8.2)	98(100.0)	
	학부모	중학교	93(55.7)	57(34.1)	17(10.2)	167(100.0)	0.690
		일반고	47(55.3)	26(30.6)	12(14.1)	85(100.0)	
		실업고	43(48.9)	32(36.4)	13(14.8)	88(100.0)	
	교사	중학교	120(65.9)	47(25.8)	15(8.2)	182(100.0)	0.209
		일반고	71(72.4)	24(24.5)	3(3.1)	98(100.0)	
		실업고	65(77.4)	15(17.9)	4(4.8)	84(100.0)	
지 역 별	학생	시	90(36.7)	121(49.4)	34(13.9)	245(100.0)	0.381
		읍·면	64(43.8)	64(43.8)	18(12.3)	146(100.0)	
	학부모	시	103(52.3)	69(35.0)	25(12.7)	197(100.0)	0.710
		읍·면	80(56.7)	44(31.2)	17(12.1)	141(100.0)	
	교사	시	149(69.7)	53(24.7)	13(6.0)	215(100.0)	0.855
		읍·면	107(71.8)	33(22.1)	9(6.0)	149(100.0)	

\* 그렇다(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부록 표 IV-13〉 학생의 권리 이해

(단위 : 명, %)

변인	집단	구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chi^2$
학생		중학교	104(56.5)	51(27.7)	29(15.8)	184(100.0)	0.849
		일반고	69(61.6)	25(22.3)	18(16.1)	112(100.0)	
		실업고	60(61.2)	23(23.5)	15(15.3)	98(100.0)	
학교 별	학부모	중학교	37(22.0)	27(16.1)	104(61.9)	168(100.0)	0.371
		일반고	16(18.8)	13(15.3)	56(65.9)	85(100.0)	
		실업고	19(21.3)	22(24.7)	48(53.9)	89(100.0)	
교사		중학교	14(7.7)	24(13.1)	145(79.2)	183(100.0)	0.613
		일반고	13(13.1)	10(10.1)	76(76.8)	99(100.0)	
		실업고	8(9.5)	9(10.7)	67(79.8)	84(100.0)	
지역 별	학생	시	154(62.9)	57(23.3)	34(13.9)	245(100.0)	0.132
		읍·면	78(52.7)	42(28.4)	28(18.9)	148(100.0)	
	학부모	시	49(24.6)	39(19.6)	111(55.8)	199(100.0)	0.091
읍·면		24(17.0)	22(15.6)	95(67.4)	141(100.0)		
교사	시	24(11.1)	26(12.0)	166(76.9)	216(100.0)	0.453	
	읍·면	11(7.3)	17(11.3)	122(81.3)	150(100.0)		

\* 그렇다(매우 그렇다 +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보통이다),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를 의미한다.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

## ( 학생 질문지 )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학생 여러분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교육 발전에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학교 공부에 힘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어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생각과 의견이 미래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은 오르지 현행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지에는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응답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물음을 잘 읽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이 태 옥 올림

◆ 다음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학교별	학교 소재지	학급에서 학업성적	부모의 교육 정도	
				부	모
①남	① 중학교	① 시	① 상(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①대졸 이상	①대졸이상
②여	② 일반계 고등학교	② 읍· 면	② 중(공부를 중간정도 하는 편이다)	② 고졸	② 고졸
	③ 실업계 고등학교		③ 하(공부를 못하는 편이다)	③중졸 이하	③중졸이하

● 보호자의 가장 주된 직업

- \_\_①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언론인, 종교인, 기술사 등)
- \_\_② 관리직(기업체 경영주 및 간부, 고급공무원, 군인(영관급이상), 경찰(경정이상) 등)
- \_\_③ 사무직(회사원, 은행원(과장이상), 일반공무원, 군인(위관,하사관), 일반비서직 등)
- \_\_④ 판매직(도·소매상, 판매점, 부동산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 \_\_⑤ 서비스직(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종업원, 환경미화원, 수위 등)
- \_\_⑥ 생산직(생산감독, 기능공, 공장근로자, 운전기사, 단순노무자 등)
- \_\_⑦ 농·어업(부농 및 소농, 농업노동자, 축산농업자, 선주, 양식업자 등)
- \_\_⑧ 가정주부(비취업)
- \_\_⑨ 기타 ( )

★ 다음 진술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나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교육활동(예: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재량활동)의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					
3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이나 예절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4	학교 규율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교 규율을 제정하는데는 학생들도 참여해야 한다.					
6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7	선생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8	선생님들은 학생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9	학생들은 이기적,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10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11	학생들은 규범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12	교육권은 인권에 바탕을 두어 행사되어야 된다.					
13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14	수업방법, 교육방법, 교재의 선정, 교육과정 선정 등을 결정 할 때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15	학부모와 교사간의 공동체 의식이 전에 비해 약해졌다.					
16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17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					
18	학생은 신체·복장·표현 등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다음 보기 중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 표하여 주십시오.

19.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수업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대부분의 학생이 집중한다.  (20번 문항으로)
- \_\_② 대략 반 정도는 집중한다.
- \_\_③ 소수의 학생만 집중한다.  (19-1번 문항으로)
- \_\_④ 거의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

19-1. 19번 문항 중 ③, ④에 응답하신 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교 밖(학원, 과외)에서도 배울 수 있어서
- \_\_②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 \_\_③ 과목 자체를 싫어해서
- \_\_④ 다른 학생들이 너무 산만하여
- \_\_⑤ 학습 의욕이 부족해서

20. 학생들은 학교의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대부분의 학생이 이해한다.      \_\_② 대략 반 정도는 이해한다.
- \_\_③ 소수의 학생만 이해한다.      \_\_④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21.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급당 학생 수 과다
- \_\_②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교과서)
- \_\_③ 학습 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 때문
- \_\_④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

22.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매우 그렇다      \_\_② 다소 그렇다      \_\_③ 보통이다
- \_\_④ 별로 그렇지 않다      \_\_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 요즘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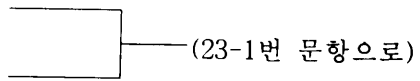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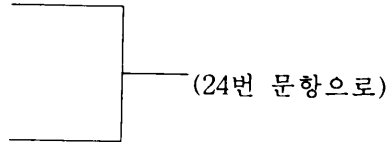
① 잘 지키는 편이다

② 어느 정도 지키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지키지 않는다

⑤ 거의 지키지 않는다



23-1. 23번 문항 중 ④, ⑤에 응답하신 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규율이 학생들의 문화나 정서와 동떨어져서

② 규율 적용이 일관되지 않아서

③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④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아서

24.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5. 학교 교육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습 기능의 비효율성

② 학교공동체의식의 파괴

③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④ 학교의 비민주성

26.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존중한다

② 존중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27.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진로, 진학문제    \_\_② 교우(이성)관계    \_\_③ 수업내용 및 방법  
\_\_④ 선생님과의 관계    \_\_⑤ 학교에서 생활지도

28. 교육권을 행사할 때 누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를 골라 우선 순서에 따라 1, 2, 3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_\_① 학생  
\_\_② 교사  
\_\_③ 학부모  
\_\_④ 학교설립자  
\_\_⑤ 지방 자치 단체  
\_\_⑥ 국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

## ( 학부모 질문지 )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교육 발전에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모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미래 학교 교육을 개선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의견은 오로지 현행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지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물음을 잘 읽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이 태 욱 올림

◆다음은 학부모님들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연 령	자녀 학교별	학교 소재지	가정의 수입 정도	부모의 교육 정도	
					부	모
① 남	①20대	① 중학교	① 시	① 상(월 300만원이상)	① 대졸 이상	① 대졸 이상
② 여	②30대	② 일반계 고등학교	② 읍 면	② 중(월150만원~300만원미만)	② 고졸	② 고졸
	③40대	③ 실업계 고등학교		③ 하(월수입150만원 미만)	③ 중졸 이하	③ 중졸 이하
	④50대 이상					

● 가장 주된 직업

- \_\_ ①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교사, 언론인, 종교인, 기술사 등)
- \_\_ ② 관리직(기업체 경영주 및 간부, 고급공무원, 군인(영관급이상), 경찰(경정이상) 등)
- \_\_ ③ 사무직(회사원, 은행원(과장이상), 일반공무원, 군인(위관,하사관), 일반비서직 등)
- \_\_ ④ 판매직(도·소매상, 판매점, 부동산중개인, 보험설계사 등)
- \_\_ ⑤ 서비스직(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종업원, 환경미화원, 수위 등)
- \_\_ ⑥ 생산직(생산감독, 기능공, 공장근로자, 운전기사, 단순노무자 등)
- \_\_ ⑦ 농·어업(부농 및 소농, 농업노동자, 축산농업자, 선주, 양식업자 등)
- \_\_ ⑧ 가정주부(비취업)
- \_\_ ⑨ 기타 ( )

★ 다음 진술을 읽고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교육활동(예: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재량활동)의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					
3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이나 예절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4	학교 규율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교 규율을 제정하는데는 학생들도 참여해야 한다.					
6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7	선생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8	선생님들은 학생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9	학생들은 이기적,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10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11	학생들은 규범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12	교육권은 인권에 바탕을 두어 행사되어야 된다.					
13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14	수업방법, 교육방법, 교재의 선정, 교육과정 선정 등을 결정할 때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15	학부모와 교사간의 공동체 의식이 전에 비해 약해졌다.					
16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17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					
18	학생은 신체·복장·표현 등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다음 보기 중 학부모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 표하여 주십시오.

19. 수업 시간에 자녀들은 어느 정도로 수업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대부분의 학생이 집중한다.  (20번 문항으로)
- \_\_② 대략 반 정도는 집중한다.
- \_\_③ 소수의 학생만 집중한다.  (19-1번 문항으로)
- \_\_④ 거의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

19-1. 19번 문항 중 ③, ④에 응답하신 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교 밖(학원, 과외)에서도 배울 수 있어서
- \_\_② 잘 이해하지 못해서
- \_\_③ 과목 자체를 싫어해서
- \_\_④ 다른 학생들이 너무 산만하여
- \_\_⑤ 학습 의욕이 부족해서

20. 자녀들은 학교의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대부분의 학생이 이해한다.  \_\_② 대략 반 정도는 이해한다.
- \_\_③ 소수의 학생만 이해한다.  \_\_④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21. 자녀들의 학교 수업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급당 학생 수 과다
- \_\_②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교과서)
- \_\_③ 학습 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 때문
- \_\_④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

22. 수업 중에 자녀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매우 그렇다  \_\_② 다소 그렇다  \_\_③ 보통이다
- \_\_④ 별로 그렇지 않다  \_\_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 요즘 자녀들은 학교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잘 지키는 편이다
  - ② 어느 정도 지키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지키지 않는다
  - ⑤ 거의 지키지 않는다
- (24번 문항으로)
- (23-1번 문항으로)

23-1. 23번 문항 중 ④, ⑤에 응답하신 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규율이 학생들의 문화나 정서와 동떨어져서
- ② 규율 적용이 일관되지 않아서
- ③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 ④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아서

24. 교사와 귀 자녀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다소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25. 학교 교육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습 기능의 비효율성
- ② 학교공동체의식의 파괴
- ③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 ④ 학교의 비민주성

26.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존중한다
- ② 존중한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27.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로, 진학문제     ② 교우(이성)관계     ③ 수업내용 및 방법  
 ④ 선생님과의 관계     ⑤ 학교에서 생활지도

28. 교육권을 행사할 때 누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를 골라 우선 순서에 따라 1, 2, 3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학생  
 ② 교사  
 ③ 학부모  
 ④ 학교설립자  
 ⑤ 지방 자치 단체  
 ⑥ 국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 ( 교사 질문지 )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권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교육 발전에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어 한없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의견이 미래 교육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오르지 현행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만 활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설문지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 물음을 잘 읽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이 태 옥 올림



◆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별	연 령	근무 학교별	근무학교 소재지	담당 과목별	
__① 남	__① 20대	__① 중학교	__① 시	__① 국어과	__⑥ 예·체능과
__② 여	__② 30대	__② 일반계 고등학교	__② 읍·면	__② 수학과	__⑦ 농업과
	__③ 40대	__③ 실업계 고등학교		__③ 윤리·사회과	__⑧ 공업과
	__④ 50대			__④ 과학과	__⑨ 상업과
	이상			__⑤ 영어과	__⑩ 수산과
				__⑪ 실업·가정과	

★ 다음 진술을 읽고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 외 교육활동(예: 클럽활동, 학생자치활동, 재량활동)의 비중은 확대되어야 한다.					
3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이나 예절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된다.					
4	학교 규율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교 규율을 제정하는 데는 학생들도 참여해야 한다.					
6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열의를 보이고 있다.					
7	선생님들은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다.					
8	선생님들은 학생의 의식과 행동 변화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다.					
9	학생들은 이기적, 개인적으로 행동한다.					
10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11	학생들은 규범의식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12	교육권은 인권에 바탕을 두어 행사되어야 된다.					
13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이다.					
14	수업방법, 교육방법, 교재의 선정, 교육과정 선정 등을 결정 할 때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					
15	학부모와 교사간의 공동체 의식이 전에 비해 약해졌다.					
16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17	학교 경영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위해 학교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					
18	학생은 신체·복장·표현 등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다음 보기 중 선생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 표하여 주십시오.

19.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수업에 집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대부분의 학생이 집중한다.  (20번 문항으로)
- \_\_② 대략 반 정도는 집중한다.
- \_\_③ 소수의 학생만 집중한다.  (19-1번 문항으로)
- \_\_④ 거의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다.

19-1. 19번 문항 중 ③, ④에 응답하신 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자녀)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교 밖(학원, 과외)에서도 배울 수 있어서
- \_\_②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 \_\_③ 과목 자체를 싫어해서
- \_\_④ 다른 학생들이 너무 산만하여
- \_\_⑤ 학습 의욕이 부족해서

20. 학생(자녀)들은 학교의 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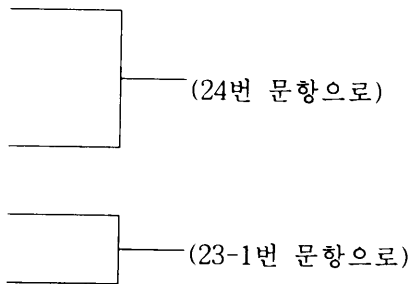
- \_\_① 대부분의 학생이 이해한다.      \_\_② 대략 반 정도는 이해한다.
- \_\_③ 소수의 학생만 이해한다.      \_\_④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21. 학생(자녀)들의 학교 수업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_\_① 학급당 학생 수 과다
- \_\_②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교과서)
- \_\_③ 학습 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 때문
- \_\_④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

22. 수업 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_① 매우 그렇다                      \_② 다소 그렇다                      \_③ 보통이다  
 \_④ 별로 그렇지 않다                \_⑤ 전혀 그렇지 않다

23. 요즘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잘 지키는 편이다  
 \_② 어느 정도 지키는 편이다  
 \_③ 보통이다  
 \_④ 별로 지키지 않는다  
 \_⑤ 거의 지키지 않는다
- 

23-1. 23번 문항 중 ④, ⑤에 응답하신 분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① 규율이 학생들의 문화나 정서와 동떨어져서  
 \_② 규율 적용이 일관되지 않아서  
 \_③ 규율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_④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지도하지 않아서

24.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_① 매우 그렇다                      \_② 다소 그렇다                      \_③ 별로 그렇지 않다

25. 학교 교육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① 학습 기능의 비효율성  
 \_② 학교공동체의식의 파괴  
 \_③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_④ 학교의 비민주성

26.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존중한다                       ② 존중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27.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진로, 진학문제       ② 교우(이성)관계       ③ 수업내용 및 방법  
 ④ 선생님과의 관계     ⑤ 학교에서 생활지도


28. 교육권을 행사할 때 누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를 골라 우선 순서에 따라 1, 2, 3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학생  
 ② 교사  
 ③ 학부모  
 ④ 학교설립자  
 ⑤ 지방 자치 단체  
 ⑥ 국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